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202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CONTENTS /

제 1 장

정치자금 회계실무 일반

I. 회계책임자의 임무와 책임	07
II. 정치자금의 정의 등	11
III.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원칙	14
IV. 정치자금 회계처리 원칙	18
V. 정치자금 회계보고	27

제 2 장

후원회 회계처리 주요 사항

I. 정치자금 기부 제한	35
II.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37
III.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38
IV.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기부	38
V.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교부	41
VI. 불법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43
VII. 모금한도 초과 방지를 위한 활동	44
VIII. 후원금 모금방법·고지 등 주요사례	46

제**3**장

정치자금 지출행위 시 유의사항 등

I. 간담회 비용 등	52
II. 의정활동용 숙소 및 차량 임차료	54
III. 격려금 및 상여금 등	56
IV.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비	58
V. 사회단체 등에 후원금 지출	61
VI. 소송비용 등의 지출	63
VII. 정책개발 등을 위한 교육비용	65
VIII. 명절선물구입·의료비 및 그 밖의 정치활동	66
IX. 정치자금 공개 차입(펀드 등)	68
X.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정치자금	69

부록

1. 각종 서식 작성 예시	75
2.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108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129
4. 후원회 등록 및 정치후원금센터 등록신청	139
5.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148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제1장

정치자금 회계실무 일반

정치자금 회계실무 일반

I 회계책임자의 임무와 책임

1. 회계책임자란

- ‘회계책임자’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된 자로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함.
- 회계책임자 1명을 별도로 두어 정치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이유는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를 회계책임자가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2.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후원회 대표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없음.

3.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 대표자는 후원회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관할 선관위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회계책임자를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 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간주함.
-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후원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후원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으므로 관할 선관위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및 회계보고 의무도 없음.

4. 회계책임자 겸임제한

-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겸임할 수 없음.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최고위원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최고위원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음.

- 국회의원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은 「정치자금법」(이하 “정금법”이라 함)상 국회의원 또는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음.

5. 회계책임자의 임무(역할)

- 정치자금 수입·지출업무 총괄
- 회계장부의 비치·기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자료 구비 및 회계보고
(정기 회계보고, 선거 참여 및 자격상실 등에 따른 수시 회계보고)
- 회계보고 종료 후 선임권자에게 회계장부등(정치자금영수증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인계
※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회계장부등을 보존하여야 함.

6. 회계책임자의 책임

- 정금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정금법 제46조제5호)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정금법 제47조제1항제10호)
 - 회계책임자 신고·변경 신고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해태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금법 제51조제3항제1호)

7. 선임권자의 책임

-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정금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허위기재, 회계보고 미제출, 재산상황·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수입과 지출에 관한 명세서·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예금 통장 사본 등 미제출 및 허위 기재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회계책임자 선임 또는 감독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2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음.

II 정치자금의 정의 등

1. 정치자금이란

-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이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정금법 제3조제1호)을 말함.
 -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2. 주체별·계정별 정치자금 분류

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 **계정별 구분**

- 자산 : 후원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개인 자산(차입금 포함)
- 보조금인 지원금/보조금외 지원금 : 소속 정당으로부터 교부된 지원금
- 후원회 기부금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품
- ☑ 예금이자 수입 등은 자산계정에 기재

● **과목별 구분**

- 선거비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 선거비용외 :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나. 후원회



● **수입계정 과목별 구분**

- 전년도이월액 : 전년도 회계보고 시 잔액으로 금년도 회계로 이월된 금액
-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이용 시 회계연도가 바뀌는 경우 국회의원 및 후원회는 전년도 이월액을 직접 수입내역에 신규 입력하여야 하나, 동일 회계연도인 경우에는 별도 입력 불요

- 기명후원금 : 후원인이 자신의 명의(성명)를 밝혀 기부한 후원금
 - ※ 예금계좌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명으로 처리함에 유의
- 익명후원금 : 후원인이 자신의 명의(성명)를 밝히지 않고 기부한 후원금
 - ※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익명 기부 가능
- 그 밖의 수입 : 차입금, 이자 수입 등
- 지출계정 과목별 구분
 - 기부금 :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한 금품
 - 후원금 모금경비 :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안내장 발송비, 정치자금영수증 발송 비용 등)
 - 인건비 : 후원회의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여비 등
 - 사무소설치·운영비 : 사무소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사무소 임차비용, 물품 구입비 등)
 - 그 밖의 경비 : 후원회 사무를 위하여 사용한 상기 이외의 비용

Ⅲ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원칙

1. 정치자금의 포괄적 규제 원칙(정금법 제2조제1항)

-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된 정치자금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함.
 - ☞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이라 함은 이 법의 개별조항(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함.
-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라 하더라도 직접 정치자금을 받거나 모금할 수 없고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 다만,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봄. 이 경우에도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부받을 수 없음.

정치자금 포괄적 금지사유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금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행위가 그 개별적·구체적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치자금 수수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정금법의 개별규정을 통하여 법이 허용하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2. 정치자금의 공개원칙(정금법 제2조제2항)

-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함.

정치자금 공개사유

누가 정치자금의 기부에 의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연계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유권자는 정치자금의 제공을 통하여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회적 세력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 세력의 실체가 정당의 방향이나 정책과 일치하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 (헌법재판소 1999. 11. 25. 95헌마154 결정)

3. ‘사적 경비’ 및 ‘부정한 용도’ 지출금지 원칙(정금법 제2조제3항)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
-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사적 경비

- 가계의 지원·보조에 소요되는 경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비용
- 향우회·동창회·종친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부정한 용도

-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 4982 판결).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례

- 사적용도에의 지출
- 사람의 도리로서 행하는 의례적인 행위(동료 국회의원의 명절선물, 축·부의금 제공 등)
- 부정한 용도에의 지출
- 위법행위와 관련한 벌금 및 과태료
-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비용(간담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제공 등)
-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비 등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례

- 의정활동·입법활동과 관련한 경비
- 선거·경선과 관련한 경비
- 정치활동과 관련 있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비
-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구체적인 지출 사례는 '제3장 정치자금 지출행위 시 유의사항 등' 참조

4. 실명확인방법에 의한 기부·지출 원칙(정금법 제2조제4항)

-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1회 50만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선거비용은 20만원,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지출하여야 함.

Ⅳ 정치자금 회계처리 원칙

1. 회계책임자를 통한 수입·지출

-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
 - ☐ 회계책임자를 신고한 후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계책임자외 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 회계사무보조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아 그 위임받은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 ☐ 1회에 50만원(선거비용 및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 ☐ 이 경우 별도의 서면위임이 필요없음.

〈‘회계사무보조자’ 및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자’의 지출범위 등〉

구분	지출범위 등
회계사무 보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의 대강내역’이란 지출의 목적과 금액이 주요항목별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며, 포괄적 위임은 금지됨. • 회계사무보조자는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위임을 받은 범위에서만 지출할 수 있으며, 위임받기 전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출할 수 없음. •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위임 가능한 것은 지출만 해당하므로 회계사무보조자는 회계책임자 외의 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입할 수 없음.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교부함. • 회계사무보조자는 교부받은 비용을 지출한 후 『정치자금 지출내역서』(서식 7)를 작성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해당 지출건의 증빙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보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책임자는 자신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회계책임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지출하게 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서식 8)를 해당 지출 건의 증빙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보고시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때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함.

※ 계좌명칭은 “국회의원 또는 후원회 명의”로 개설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개설할 수 있음.

- ☐ 회계책임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회계책임자 변경 시 정치자금 예금계좌는 물론 자동이체 등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방법〉

“회계책임자 등의 명의” 예금계좌 개설(금융기관) → 후원회등록신청시 예금계좌 신고(선관위) → 후원회등록증 수령(선관위) → 고유번호증 발급(세무서) → “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금융기관) → 예금계좌 변경신고(선관위)

※ 계좌번호 변경없이 “예금주 명의”만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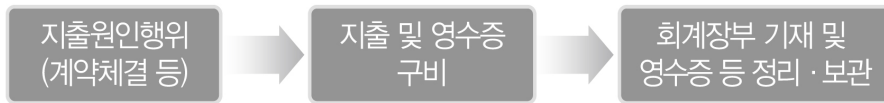
-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하고, 수입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출용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출하여야 함.
- ☐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1개로 겸용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함.

3. 정치자금 지출 처리

가. 지출대상

- 정치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채권자

나. 지출절차



- ☐ '지출원인행위'란 정치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장비 등의 제작·임차, 홍보물의 인쇄 또는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하여 관련업체에 주문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용인부 등을 고용하는 행위 등을 말함.

다. 지출방법

-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자금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인출한 자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함.
 - ☐ 지출상의 편의를 위해 현금을 출금한 후 여러 지출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지체 없이 지출용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당초 지출 과목에서 감처리
 - ☐ 수표로 지급 시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내역란에 발행금융기관명, 수표번호를 부기함.
-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 ☐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사용대금이 익월에 일괄 지출되므로 체크카드 사용이 바람직함.

라. 지출시기

- 수표나 현금의 경우 지급하고자 하는 날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출
 - ☐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으로, 후원회의 경우 『그 밖의 경비』 과목으로 지출 처리

4. 회계장부 기재

가. 비치장부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수입·지출 관련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포함)
 - ☐ 회계장부는 수기용 장부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관위에서 배부한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관리하는 것이 편리함.
 -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 자료공간 / 선거·법규·정당 / 자료공간”에 게시

나. 장부 기재요령

- 시기 :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발생한 때마다
- 내용 : 수입·지출 연월일, 금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법인·단체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무소소재지)·직업(업종)·전화번호], 영수증 일련번호(지출에 한함)
- 방법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이나 회계장부에 수입 및 지출 건별로 기재(입력)하되, 계정별·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함.
 - ※ 수입은 반드시 정치자금 수입방법에 따라 계정 또는 과목 선택
 - ※ 지출은 잔액이 있는 계정 중 어느 계정에서 지출 처리할 것인지 선택하고, 반드시 지출 목적과 용도에 해당하는 지출 과목에서 지출 처리

다. 기재시 유의사항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그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1건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됨.
- 계약금, 증도금, 잔금 형식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도 실제 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기재(입력)함.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부 입력(기재) 시는 입력 자료는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자료 유실을 예방하여야 함.
※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용방법은 부록 5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금전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금액과 수표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라. 재산 등록(재산명세서 작성)

- 재산은 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 회계보고 시 제출
- 등록 대상 재산
 - 후원회 : 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 후원금 또는 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
- 재산명세서에 누락 된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회계보고서 재산명세서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지출연월일 기재
※ 재산명세서 작성내용은 부록 2 및 부록 3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1. 재산명세서 참조

5.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정리

가. 구비원칙

-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무통장 입금증만 제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회계책임자는 1차 수령인의 수령증을 받고 그 명세와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함.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예외 사유

-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함) 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구비요령

- 사업자별 영수증 구비대상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 간이과세자 : 간이영수증,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발급 불능자(사업자가 아닌 유급사무직원 등) : 금액(물품인 경우 품명·가액·수량), 내역, 영수일자, 영수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날인된 영수증 징구

- 과세사업자 구분방법

- 과세사업자 여부는 당해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 국세청홈택스 인터넷사이트[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 /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에서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다. 구비 시 유의사항

- 예금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무통장입금증, 거래이체내역서, 입금된 예금계좌사본 외에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함께 구비하여 증빙 서류철에 편철·관리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등만으로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지출 명세서를 작성 또는 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증빙서류철에 편철·보관함.

라.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편철 방법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는 수입·지출이 있는 때마다 구비하여야 하며 매 건마다 수령자별로 영수증 등을 받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영수증 일련번호란”에 증빙번호를 기재하고 영수증은 계정별·과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편철·보관하여야 함.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는 일련번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수증 등이 잘 보이도록 순서대로 첩부한 후 표지를 붙여서 편철함.
- 하나의 지출건에 여러 개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련번호에 다시 일련번호를 부여(예 : 5-1, 5-2)하여 연이어 첩부함.

※ 구체적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첩부 및 정리 방법은 부록 2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참조

마. 증빙서류 구비 후에 하여야 할 일

- 회계책임자는 증빙서류에 영수금액, 품명, 계산서 발행일자나 영수일자, 성명(법인·단체명)·주소(사무소소재지)·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직업(업종)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정상적으로 구비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증빙서류철에 편철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한 영수증 일련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각 증빙서류의 아랫면의 적당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함.

V 정치자금 회계보고

1. 후원회의 회계보고

가. 보고대상 및 기한

구분	대상 기간		보고 기한
평년(연간모금한도액 모금가능연도)	상반기	1. 1. ~ 6. 30. 현재	7. 31.까지
	하반기	7. 1. ~ 12. 31. 현재	다음연도 1. 31.까지
2배 모금·기부 가능연도	1. 1. ~ 선거일 후 20일 현재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 ~ 12. 31. 현재		다음 연도 1. 31.까지
후원회 해산	직전 회계보고기준일 이후부터 사유발생일 후 14일 이내		사유발생일 후 14일 이내

나. 보고사항

-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 후원회의 수입·지출 총괄표
 - 후원회의 과목별 수입부 / 과목별 지출부
 -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후원금 기부자 명단
 -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1회 30만원 기부자 포함안됨]
 -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연간 300만원 기부자 포함안됨]
- ※ 회계책임자가 금융기관의 회보를 통해 후원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수차례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는 등 인적사항에 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회계보고 시 소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자체 감사기관 감사의견서
- 대의기관(수입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
- 잔여재산 인계·인수서(사유 발생시)

다. 회계보고서 작성절차

- 회계장부의 정리 및 대조·확인
 - 후원회의 수입부와 지출부 및 과목별 명세서를 확인하여야 함.
 - 수입·지출과 관련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등은 사유발생시마다 구비하여야 하며, 회계마감일까지는 전체적인 구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회계보고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준비
 - 후원회의 정관·규약 등의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기관의 구성여부와 결원 상태 등을 확인하여 감사일정을 확정하여야 함.
 -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입기관의 심사·의결일정을 확정하여야 함.
- 정치자금영수증 잔여매수 보고
 - 후원회는 선관위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의 매년 12월 31일 현재 매수 등 사용실태를 정기회계보고 시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함.
- 회계장부의 마감 등
 - 각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 등을 계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함.
 - 각 장부를 마감하고 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 회계보고서 작성·감사 등
 - 회계보고서 작성
 - 후원회의 회계사무에 대한 감사 등 실시
 - 회계사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관은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함.
 -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을 통해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수입·지출내역을 확정하여야 함.
- 회계보고서 제출
 - 제출처 : 관할 선관위
 - 보고방법 : 대표자 명의의 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 부록 2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참조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

가. 보고대상 및 기한

구분	대상 기간	보고 기한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1. 1. ~ 12. 31. 현재	다음연도 1. 31.까지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1. 1. ~ 선거일 후 20일 현재	선거일 후 30일 까지
	선거일 후 21일 ~ 12. 31. 현재	다음연도 1. 31.까지
후원회 지정 철회 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상실의 경우	직전 회계보고기준일 이후부터 사유발생일 후 14일 이내	사유발생일 후 14일 이내

나. 보고사항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재산명세서(후원금 또는 소속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에 한함)
- 계정별·과목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잔여재산 인계·인수서(사유 발생시)

다. 회계보고서 제출처

- 비례대표 국회의원 : 중앙선관위
- 지역구 국회의원 :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관할 구·시·군선관위

※ 부록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참조

3. 후원회 해산·국회의원 자격 상실 시 잔여재산 처분

가. 처분기한

- 회계보고 전까지

나. 처분방법

- 정금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당원이 아닌 경우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
- 현금 및 예금계좌 잔액은 계좌이체로, 비품 등은 직접 정당 등에 인계
- 비품 등은 개인 또는 중고물품 수거 업체 등을 통해 처분할 수도 있으며, 처분 당시 해당 비품 등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으로 거래
※ 수령증 및 증빙서류 등을 회계보고 시 첨부하고, 처분 금액은 수입 처리하고 지출 가능
- 비품 등을 노후화 등의 사유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견적서, 사진,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한 폐기사유서 등)를 회계보고 시 첨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제2장

후원회 회계처리 주요 사항

후원회 회계처리 주요 사항

I 정치자금 기부금의 제한

1.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

-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 정금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가 제한됨.
- ※ 다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일지라도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음.

2.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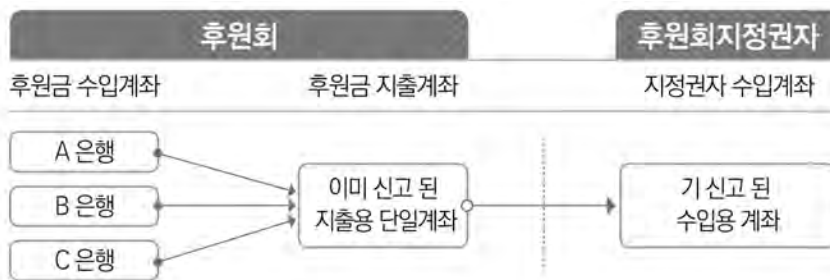
3. 기부의 알선 금지

-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

II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함.
 - ▣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연도 기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정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하는 때까지 기부 가능
 - ▣ 전년도에 연간 기부한도액까지 기부하지 못하였다면 금년도는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음.
-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음.

〈후원금 흐름도〉



Ⅲ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공직선거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기부 가능
-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임.
 - ☐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임.

Ⅳ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기부

1.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 평년도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액(전년도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함)과 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1억 5천만원임.
 - ※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초과모금할 수 있음.
 - ※ 전년도에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금년도 후원회 모금액에 포함하여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 여부 계산
 - ※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는 없으나, 이월하여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 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후원금 모금한도액이 초과한 당일의 다음날 계좌폐쇄까지 입금된 초과 모금액
 - ※ 초과된 다음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공휴일, 토·일요일)인 경우, 휴무일 이후 첫 번째 평일의 계좌폐쇄까지 입금된 모금액 포함
 - ※ 다만, 초과일 다음날(휴무일 이후 첫 번째 평일 포함)까지 계좌폐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원금 모금한도액이 초과한 당일에 입금된 초과 모금액(초과된 다음날이 휴무일이어서 계좌 폐쇄 등을 할 수 없어 모금된 금액 포함)은 인정
- 모금한도액이 초과한 당일 이전에 후원인이 결제하였으나 정산기일이 소요되어 모금 한도액 초과일 후에 수입계좌에 입금된 금액
 - ※ 정치후원금센터(토스페이먼츠), 신한카드아름인, 롯데카드포인트, CMS, ARS, 신용카드결제 등

●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선거명	대상 후원회	모금·기부한도액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3억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로 등록된 국회의원후원회	3억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3억

- ☞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3억)만 모금·기부할 수 있음.

2. 후원금 모금방법

- 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서는 모금할 수 없음.
 - 우편·통신(전화,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에 의한 모금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등

3. 후원금 모금시 유의사항

- ARS/LG U+ 등을 통한 모금시 후원금모금액은 후원인이 실제 후원한 금액(수수료 포함)을 기재하며, 수수료는 일자별로 지출처리(과목: 후원금 모금경비)
 - ☐ 후원금 영수증 발급금액과 모금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하여야 하며, 후원금만 모금하여 인계하게 하고 추후 후원회에서 영수증을 일괄 발급하는 행위는 위법임.
 - ☐ 사전에 수임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고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수임자 인적사항 및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 ☐ 수임자는 후원금을 인계하는 때마다 「후원금의 인계·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함.
 - ☐ 수임자가 정치자금영수증 교환에 의해 모금한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에 일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신의 계좌를 통해 모금하는 것은 위법임.

V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교부

- 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 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 다만, 후원인이 그 정치자금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후원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당해 후원회가 보관하여야 함.
- 1회 1만원 이하 기부 시 연도 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음.
- 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 중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무정액영수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액과 정치자금영수증(전자 정치자금영수증 포함) 발급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대상」을 비치·기재하여야 함.
 - 후원인에게 교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음.
 - 인터넷을 통하여 무정액영수증을 발급·교부한 때에는 선관위에서 인쇄 제작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 후원회는 관할 선관위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의 매년 사용실태를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시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함.

- 성명 외에 후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처리 방법
 - 정치후원금센터 [익명후원금] 기능 활용하여 자료처리 가능
 - '기명' 후원금으로 수입 처리하되, 영수증 발행만 [익명후원금] 기능 활용
 - 추후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후원금관리]-[후원금/영수증관리]에서 해당 후원 건을 검색하여 정보 수정

후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입력 방법

- 메뉴위치 : [후원금관리] - [후원금등록] - [수기등록]
- [익명후원금] 클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이 임의의 자료로 자동입력됨.)
- 성명을 실제 후원인명으로 수정
- 기부금액, 기부일자, 입금일자 입력
- [기부금데이터검증] 버튼 클릭
- 데이터 검증 완료 후 후원금 내역 최종 등록
 - ※ 추후 후원인의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경우 해당 후원 건을 검색하여 정보 수정

VI 불법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1. 반환 대상·방법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 반환할 경우 이미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하며, 반환한 후원금의 기부연도와 반환연도가 동일한 경우 『수입계정』 - 『후원금』 과목에서 “감처리”하며,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계정』 - 『그 밖의 경비』 과목에서 지출처리하되,
- “불법후원금 반환(성명, 기부일자)” 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고 반환받은 정치자금영수증과 입금영수증을 합본하여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함.
 - ☑ 정치자금영수증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회계보고서 소명서 제출

2. 국고귀속 사유 및 절차

- 불법 후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관위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

국고귀속 절차

-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 관할 선관위에 제출(회계책임자) → 국고금 납부통지 (관할선관위) → 통지된 납입계좌에 귀속대상 후원금 납입(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가 귀속대상 후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상기의 “1. 반환 대상·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되, “불법후원금 선관위 국고귀속”으로 사유를 기재한 후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와 입금증을 합본하여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함.

Ⅶ 모금한도 초과 방지를 위한 활동

1. 사전준비

- 모금방법별(ARS,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담당자 연락처 사전 확보
※ 정치후원금센터 관련 문의 : 중앙선관위 정당과(☎ 02-3294-8361)
- 입금증지에 필요한 서류(대표자 위임장, 인감 등) 확인 및 사전 준비

2. 후원회 모금액에 대한 확인·점검

- 연말 또는 모금한도액 임박 시 수시로 계좌를 확인하여 초과 여부 점검
 전자결제대행사, 각종 카드사 포인트 기부사이트, ARS 등은 해당업체 홈페이지와 관리업체 등을 통해 사전에 후원금 모금내역 확인 가능
-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의 전일 오후에는 반드시 모금액을 확인하고, 휴무일 다음날 오전에는 휴무일 동안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초과모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모금중지 조치

-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방법별(휴대전화, 신용카드, 포인트 등) 계좌이체 기간을 고려하여 모금 중지 조치
- 정치후원금센터 등 선관위를 통해 모금하는 후원금은 선관위에서 후원회 계좌 입금시기를 고려하여 일괄 모금 중지
 - ▣ 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ARS 또는 카드 모금, 후원회 계좌 등은 후원회에서 직접 모금(입금) 중지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선관위의 일괄 모금중지 전이라도 모금한도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에서 모금 중지를 시켜야 함.

4. 후원금 초과모금에 대한 처리

-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제외) 그 금액을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국고귀속 조치



후원금 모금방법·고지 등 주요사례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정금법 §15)

-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음.
 - ※ 다만, 다른 정당·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음.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하여 광고할 수 있음.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

- 동창회나 종교모임은 후원금 모금주체가 아니므로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없음. (2004. 12. 1. 회답)
-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일반인 등이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대표자인 경우 해당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안내장에 그 후원회대표자의 사진·인사말 등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2010. 5. 7. 회답)
- 개인(외국인 아님)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개인자금)에서 후원금을 입금하는 것은 가능함. (2013. 4. 2. 회답)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이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과 후원금 모금 계좌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2014. 9. 4. 회답)

- 후원회가 「정치자금법」 제15조에 따라 발송하는 안내장에는 지정권자 외에 다른 정당·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대통령선거경선 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없는 바, 중앙당 후원회의 안내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임. (2017. 12. 18. 회답)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제3장

정치자금 지출행위 시 유의사항 등

정치자금 지출행위 시 유의사항 등

기 본 방 향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음.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사적용도 지출이나 부정한 용도 사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출명세서에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기재하고, 동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구비하여야 함.

아울러 관할 선관위에서는 ①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 후 식대 등으로 기재하는 행위, ② 사적용도의 식비 등 지출을 간담회 등 각종 공적인 행사명목으로 허위보고 하는 행위, ③ 회계보고 시 명확한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중점조사·확인할 예정임.

다만, 정치자금 지출은 대상·목적·방법 등 구체적 양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출가능 여부 등의 판단이 어렵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I 간담회 비용 등

위반유형

- 직원 식대 및 간식비 등을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에서 지출
- 골프비용, 노래방·주점 등을 이용한 비용을 '간담회' 또는 '식대'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에서 지출
- 회계보고 시 정책개발, 의정활동 관련 구체적 내역 및 자료 제출 없이 매출전표 등의 영수증만 첨부

- 정책개발, 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식대 등의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 유흥주점에서의 개최, 동문회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선거구민 등 대상 기부행위 성격 모임, 골프모임 후 식사를 위한 명목상의 간담회 비용, 보좌진 등의 사적 사용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는 정치자금으로 지출 불가
- 선거구민과의 간담회 개최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
- 정당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간담회·업무협의회 등의 행사내용·참석 대상 등을 기재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여 회계보고 시 첨부

질의 사례

-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각종 정책간담회·세미나·토론회 개최 비용, 정책활동과 관련한 간담회·공청회 등의 식대, 기자간담회(기자회견)후 식대,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경비, 지역사무소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인건비, 비품, 공공요금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제공 등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한 경우 외에 선거구민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4. 7. 9. 회답)
-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식대 등의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제공 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사목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른 1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 등 같은 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한 경우 외에 당해 선거구민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9. 3. 3. 회답)
-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 현안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현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에게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참석한 지역주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2013. 3. 21. 회답)
-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발제자에게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는 범위의 사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2015. 7. 22. 회답)

II 의정활동용 숙소 및 차량 임차료

위반유형

- 아파트 등을 의정활동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자금에서 임차하였으나, 국회의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숙소로 사용
- 수행비서 등 보좌진의 숙소 임차료를 정치자금에서 지출
-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임차한 의정활동용 차량을 보좌관 및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
- 의정활동용 차량의 임차보증금을 후원회기부금으로 지출하고 계약 만료 시 정치자금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 차량 인수 비용으로 사용

- 주된 의정활동 지역이 실제 생활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아파트 등을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 국회의원 본인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최소한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 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가족 또는 보좌진 등 제3자가 출·퇴근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으로 지출 불가
-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 차량의 임차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가족 또는 보좌진 등 제3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 불가
- 국회의원 등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의정활동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 기간이 아닌 기간의 차량보험료는 사적 경비로 지출 불가

※ 임차 기간 종료 시 해당 차량보험 계약 해지

- 회계보고 시 숙소·차량 임차의 목적·사유 등을 기재하고 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관련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질의 선례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한 아파트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8. 7. 24. 회답)
-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차·사용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9. 1. 9. 회답)
- 국회·지역구 등 주된 의정활동지역이 실제 생활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아파트를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가계의 지원·보조를 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제2조에 위반 될 것임. (2010. 12. 23. 회답)

Ⅲ 격려금 및 상여금 등

위반유형

- 국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보좌관·비서관 등에게 정기·부정기적으로 임금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에서 지급
 - 고용주체가 국회사무처인 국회인턴직원에게 일상 업무에 대한 대가 또는 생계보조금 등을 정치자금에서 지급
-
- 고용주체가 국회사무처인 별정직공무원 보좌진과 인턴직원에 대하여 국정 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격려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에 따른 노고의 격려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므로 지급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정치자금으로 지출 불가
 - 고용주체가 국회의원인 유급사무직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상여금(휴가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지급행위로 정치자금으로 지출 가능
 - 직원의 고용주체(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의원)에 따라 지출가능 여부가 다름에 유의
 - 격려금 등을 지급할 경우 목적·대상·지급사유 등 구체적 내역을 기재하고 지급증빙(수령자 날인 등)서류 등을 첨부하여 회계보고

질의 선례

- 국회의 인턴직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인턴직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외에 추가로 정책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국회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수 외에 추가로 정책 연구개발비를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2005. 4. 13. 회답)

- 통상적인 인건비의 범위안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당해 국회의원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지급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2006. 9. 29. 회답)
-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에게 임금 지급과 같은 성격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위반될 것임. (2006. 9. 29. 회답)
- 국회의원이 보좌관등 소속직원에게 설·추석 등 명절에 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상시 보조하는데 대한 격려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활동에 해당되므로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2007. 4. 19. 회답)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통상의 위로·격려금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0. 3. 24. 회답)
-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정치활동에 소요된 비용(퇴직하는 보좌직원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퇴직위로금을 포함함)은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 전까지 정산·지출할 수 있음. (2010. 9. 6. 회답)
-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에 위반될 것임. (2010. 9. 15. 회답)

- 지역구국회의원이 선거구민 등이 아닌 해당 국회의원후원회 유급사무직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2020. 9. 14. 회답)

Ⅳ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비

위반유형

- 향우회, 동창회, 사적모임 등의 회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
- 국회의원 자신이 회장, 이사 등의 간부로 있는 단체·모임 등에 정치활동 명목으로 운영관례상의 의무를 벗어나 고액의 특별회비를 정치자금에서 납부

-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또는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경우에 그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한 *종전의 범위 안에서 관련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가능

*종전의 범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 '종전의 범위'의 기준은 절차를 준수하여 개정 또는 변경된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효하지 않은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 다만, 이를 벗어난 특별회비 또는 고액회비, 동문회·계모임 등의 회비, 간담회 명목의 사적 모임 지원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통상적인 회비납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치자금에서 지출 불가

- 단체 등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정치활동과의 연관성, 단체에서의 지위, 정관·규약·회비의 성격 및 금액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정치자금 지출
- 정치활동을 위한 단체의 회비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

질의 선례

- 국회의원이 정치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당해 법인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계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기 보다는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에 기하여 행하는 의례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을 것임. (2005. 2. 14. 회답)
- 국회의원이 불교의 발전과 현안문제의 해결 기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정각회」의 회원으로 참여·활동하는 경우 그 회칙상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의 사적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무방할 것임. (2008. 10. 1. 회답)
-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또는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계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납부하는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2009. 6. 18, 2010. 9. 13. 회답)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정포럼’ 운영회비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3. 1. 28. 회답)

- 국회의원이 가입되어 있는 연구재단(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의 회비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3. 12. 19. 회답)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국회의원 축구연맹’에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납부하는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2017. 3. 29. 회답)

V 사회단체 등에 후원금 지출

위반유형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기관·단체가 아닌 선거구내 단체에 정치자금에서 후원금 지출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등에는 정치자금 지출 가능
- 선거구 밖에 있는 단체라도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명목임에도 정치자금에서 후원금 지출

-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회단체 등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 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② 국회의원의 정치활동과 관련성 필요
- 해당 단체의 소재지·활동 목적 및 내용·구성원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금지 상대방(선거구안에 있는 단체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 기부하려는 단체의 설립목적·주요 사업·기부금 사용실적 등을 통해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치자금 지출 필요
 - ※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면 정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또는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구호적·자선적 행위인 경우에는 후원금 지출 가능

질의 사례

- 해외에서 구호·자활사업을 하는 단체에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음. (2009. 6. 25. 회답)
-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치자금으로 문화재환수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동 단체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인 때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2010. 10. 21. 회답)
-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내용의 강연 후원은 그 단체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니라면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지출할 수 있을 것임. (2010. 12. 3. 회답)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당해 선거구”라 함은 전국을 말하는 것인바, 법령의 근거 없이 선거구안에 있는 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임. (2013. 3. 11. 회답)
-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국방대학교 발전기금(국민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안보와 이를 위한 연구와 교육, 민관교류, 군사외교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 모금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발전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4. 11. 28. 회답)
※ 국방대학교는 지역구 내 대학이 아님.

VI 소송비용 등의 지출

위반유형

-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로 인한 각종 소송의 수행경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피고로서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패소하더라도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정치자금으로 지출 가능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아 정치자금에서 지출이 가능하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보아 정치자금으로 지출 불가
- 국회의원이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해당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 불가

질의 선례

-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의 납부는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음. (2005. 2. 22. 회답)

- 국회의원이 정당의 대변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 배상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정치활동에 소요된 경비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송의 결과에 불문하고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2006. 5. 3. 회답)
- 별개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그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가 소송 수행과정에서 무죄사건에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비용 상당액이 될 것임. (2009. 4. 29. 회답)
-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0. 2. 24. 회답)
-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의 경중을 불문하고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보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을 것임. (2013. 9. 25. 회답)
-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변호사 선임비용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을 것임. (2013. 9. 25. 회답)
- 국회의원이 투표지 보전신청,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지대, 증거보전과 재검표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 법원 납부 금액 및 변호사비 등 소송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2016. 4. 22. 회답)

-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말함)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2021. 2. 3. 회답)
- 연체료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이 연체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에 해당하여 위반될 것임. (2021. 3. 11. 회답)

Ⅶ 정책개발 등을 위한 교육비용

위반유형

-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원비, 학위 과정 등의 등록금을 정치자금에서 지출
- 국회의원의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또는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치자금으로 지출 가능
- 정책개발 등을 위한 교육비용이 정치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등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정규 학위 과정 등록비, 자격증 취득비용, 어학교습비 등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정치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회계보고 시 정치활동과의 관련성이 적시되도록 구체적 자료를 첨부



명절선물구입·의료비 및 그 밖의 정치활동

위반유형

-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우나, 이발소, 미용실 이용 대금 및 스포츠센터 이용, 물품 구입 등을 정치자금에서 지출
-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구두, 화장품, 옷 등의 개인물품 구입비용을 정치자금에서 지출

-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등을 치료하기 위한 국회의원 본인의 의료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으나, 의정활동과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치자금으로 지출 불가
- 체력단련 물품 구입, 스포츠센터 이용, 골프 비용 등 개인적인 여가·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우나, 이·미용, 의복(예 : 출퇴근용 양복)·구두·안경 구입 및 세탁·수선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활동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정치자금에서 지출 불가
- 예외적으로 구입·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의정활동과의 구체적 인과관계가 소명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무와 관련한 국외출장은 출장결과보고서, 현지 사용업체의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
-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경비를 국회사무처에서 정책개발비로 사후 보전 받은 경우 정치자금계좌에 입금하고 당초 지출내역이 기재된 동일한 계정에 지출내역을 기재하고 감(-)처리

※ 지출한 연도와 환급받은 연도가 다를 경우 「후보자등 자산」 계정에 수입처리

질의 선례

- 국회의원이 정당의 도당 대표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기탁금의 납부, 당내 경선을 위한 인쇄물의 작성·배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5. 1. 20. 회답)
- 국회의원이 기부행위제한대상자가 아닌 동료 국회의원에게 구정을 맞이 하여 지역특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리로서 행하는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을 것임. (2005. 2. 4. 회답)
-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 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볼 수 없을 것임. (2005. 10. 24. 회답)
-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의를 위한 심의료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2008. 2. 4. 회답)
-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관계자를 면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9. 1. 15. 회답)
- 국회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 본인 및 보좌진에게 정치자금으로 스마트폰을 구입(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이 경우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구입하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명세서에 포함하여 기재·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2010. 2. 11. 회답)

- 국회의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두는 사무소 임대료, 집기구입·설치비, 사무소 운영비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0. 9. 15. 회답)

Ⅸ 정치자금 공개 차입(펀드 등)

개념

-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차입방식으로 차입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후 보전비용 등을 통하여 원금과 통상적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방식

질의 사례

-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펀드 등의 명칭으로 원금보장 및 확정이율을 약속하고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공개 차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율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 (2012. 2. 13. 회답)
- 「공직선거법」 제59조 등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정치자금 차입을 홍보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의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2. 2. 13. 회답)

X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정치자금

▶▶ 적용대상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영목적·방법·내부 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정치활동에 관한 유튜브·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 운영 시 광고·후원금 등 수익활동에 있어서도 「정치자금법」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함.

◆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유형

1. 광고 : 애드센스(AdSense) 등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 수입
 - 애드센스(AdSense) 광고 : 유튜브 등 제작자가 광고주가 아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계약하여 영상 전후에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를 게재하고 소셜미디어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
 - PPL(Product Placement) 광고 : 제작자와 광고주가 계약하여 광고주의 상품·브랜드 등을 노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비를 받는 방식
2. 시청자 후원 : 시청자가 제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 수입
 - 슈퍼챗(유튜브), 별풍선(아프리카TV), 팝콘(팝콘TV), 쿠키(카카오TV), 캐시(팟빵), 스폰(스폰라디오), 자율구독료 등

질의 사례

1. 광고 수익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국회의원·당대표경선 후보자 등)을 게스트로 초청·대답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 가능함.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2019. 1. 21. 회답)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광고 없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2019. 1. 21. 회답)
 - ※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정금법 제2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음.

2. 시청자의 직접 기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국회의원·당대표경선 후보자 등)을 게스트로 초청·대답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슈퍼챗 등으로 시청자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은 가능함.
 - ※ 후원금은 정치인이 아닌 운영·관리자에게 귀속됨을 공지 필요
 -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출연료 외의 금전을 받을 수 없음.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슈퍼챗·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불가능함.
 - ※ 유튜브 슈퍼챗을 통하여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에 있어 기업의 수익금 중 일부인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금법 제31조 및 제45조제2항에도 위반될 수 있음.
-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방법·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불가능함.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개인 계좌 또는 제작사의 계좌를 게재하여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불가능함.
 - ※ 정금법 상 등록된 후원회의 신고된 계좌 공개는 가능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부 록

각종 서식 작성 예시

각종 서식 목록

- 〈서식 1〉 회계책임자 (선임)·(겸임)·(변경) 신고서
- 〈서식 2〉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서식 3〉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서식 4〉 인계·인수내역
- 〈서식 5〉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 〈서식 6〉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 〈서식 7〉 회계사무보조자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 〈서식 8〉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 〈서식 9〉 후원회 등록신청서
- 〈서식 10〉 후원회 정관
- 〈서식 11〉 후원회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 〈서식 12〉 인영서
- 〈서식 13〉 후원회(지정)·(지정철회)서
- 〈서식 14〉 후원회 결성 회의록
- 〈서식 15〉 후원회 사무소 소재지 약도
- 〈서식 16〉 후원회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서
- 〈서식 17〉 후원회 (가입)·(탈퇴)원서
- 〈서식 18〉 후원회 회원 명부
- 〈서식 19〉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서
- 〈서식 20〉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대장
- 〈서식 21〉 정치자금영수증 잔여매수 (보고)·(반납보고)서
- 〈서식 22〉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 〈서식 23〉 위임장
- 〈서식 24〉 후원금의 인계·인수서
- 〈서식 25〉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

서식 1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문서번호				
회계책임자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1	전화번호	02-123-4567
(선임)·(겸임)·(변경)연월일		2024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치자금예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입용	○○○	○○은행	123-45-000911	
지출용	○○○	○○은행	123-45-000911	
<p>「정치자금법」(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인)</p>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시) 3.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변경신고시) 				
<p>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p> <p>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후원회대표자, 국회의원이 됨.</p>				

서식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첨부서류)

취 임 동 의 서		
성 명	○○○(한자 : ○○○)	
주 소	○○시 ○○구 ○○로 1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자택) -	(휴대전화) 010-123-4567
<p>본인은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 ○○○ (서명 또는 날인)</p>		
국회의원 ○○○ 귀하		
국회의원○○○후원회 대표자 귀하		
<p>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함.</p>		

서식 3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첨부서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인계자 (전 회계책임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1	전화번호	02-123-7654
인수자 (현 회계책임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456	전화번호	02-123-4567
인계·인수내역	별 지 참 조			
인계·인수연월일	2024년 월 일			
<p>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제35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계자(직위) 전 회계책임자 ○○○ (인) 인수자(직위) 현 회계책임자 ○○○ (인) 입회자(직위) ○○○ (인)</p>				
<p>주 1. 인계·인수서는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마다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회계책임자가 변경신고서 첨부하여야 함.</p> <p>2. “인계·인수내역”란에는 재산, 정치자금의 사용잔액, 회계장부, 예금통장·체크카드, 후원회인·그 대표자 직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및 정치자금영수증(원부포함)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으로 하되,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p> <p>3. “입회자”란에는 선임권자가 서명·날인함.</p>				

서식 4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별지)

인계·인수내역

구분		수량	금액 (원)	비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출력물		1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출력물		1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백업파일		1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50		증빙서류 총매수기재	
신 고 된 예금계좌	수입용	○○은행, (123-45-678901)	1	5,000,000	통장잔액 기재
	지출용	○○은행, (123-45-678901)			
체크카드 (○○은행, 9410-3210-0000-0000)		1			
책상		4	500,000		
의자		2	20,000		
컴퓨터		1	500,000		
⋮		⋮	⋮		

※ 인계·인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함.

서식 5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분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변경전	수입용	○○○	○○은행	123-45-000911	
	지출용	○○○	○○은행	123-45-000911	
변경후	수입용				
	지출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 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 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후원회대표자, 국회의원이 됨.
- 3. 예금계좌 신고시에는 “변경후” 란은 작성하지 아니함.

서식 6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1. 수임자(회계사무보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	-	○○시 ○○구 ○○로 123	123-4567	

2. 위임내용

위임기간	지출목적	지출의 대강의 내역	지출한도금액	지출기간	비고
2024. 7. 1. ~7. 3.	물품구입	사무용품 구입	600,000	7. 1.~7. 3.	
		사무용 가구 구입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지출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임자 회계책임자 ○○○ (인)
수임자 회계사무보조자 ○○○ (인)

주 : 본 위임장은 증빙서류철에 보관·관리해야 함.

서식 7

회계사무보조자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1. 총 괄

위임기간	위임액	지출액	잔액	비고
2024. 7. 1. ~ 7. 3.	600,000	600,000	0	

2. 세부지출내역

연월일	내역	지출액		잔액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무소 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 번호		
7. 1.	사무용품 구입	350,000	350,000	250,000	○○ 문구	123-45- 6789	○○구 ○○로 23	서비스	124- 5978	1	
7. 3.	사무용 가구 구입	250,000	600,000	0	○○ 가구	532-12- 5789	○○구 ○○로 12	서비스	324- 1257	2	
계			600,000	0							

※ 지출내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위와 같이 본인이 지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사용내역 1부(별지 첨부시)
 2. 영수증 등 증빙서류 2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예금통장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경우에만 제출)

2024년 월 일

제출자 회계사무보조자 ○○○ (인)

회계책임자 ○○○ 귀하

주 : 본 지출내역서를 증빙서류철에 보관·관리하고 그 사본을 회계보고서 제출시 첨부해야 함.

서식 8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1. 총괄

지출기간	지출건수	지출액	비고
2024. 7. 1. ~ 7. 3.	2건	600,000	

2. 세부지출내역

연월일	내역	지출액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무소 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 번호		
7. 1.	사무용품 구입	350,000	350,000	○○ 문구	123-45-6 789	○○구 ○○로 23	서비스	124- 5978	1	
7. 3.	사무용 가구 구입	250,000	600,000	○○ 가구	532-12-5 789	○○구 ○○로 12	서비스	324- 1257	2	
계			600,000							

※ 지출내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위와 같이 본인이 지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사용내역 1부(별지 첨부시)
2. 영수증 등 증빙서류 2부

2024년 월 일

제출자 ○○○ (인)

회계책임자 ○○○ 귀하

주 : 본 지출내역서를 증빙서류철에 보관·관리하고 그 사본을 회계보고서 제출시 첨부해야 함.

서식 9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칭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로 1	전화번호	02-123-4567
대표자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로 456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별첨과 같음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별첨과 같음		
<p>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 「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의원○○○후원회 대표자 직인</p>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인영서(별지) 1부 4. 후원회지정서 1부 5.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1부 6.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p>주 1. “명칭” 칸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함. 2. 회의록은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 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p>			

서식 10

국회의원○○○후원회 정관

2024년 월 일

국회의원○○○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국회의원○○○후원회’라 칭한다. (이하 “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후원회지정권자 ○○○에게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구·시·군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정치자금 기부제한 자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자유의사에 의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가입과 탈퇴)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후원회에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탈퇴는 탈퇴원서를 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회원의 제명) ① 회원으로서 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총회

제7조(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후원회의 최고결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후원회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2. 후원회 대표자의 선출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
4. 사업보고의 승인

5.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6. 후원회의 감시기관에 관한 사항
7. 기타 후원회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
- ② 총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는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그 기능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조(총회소집) 총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이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표자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총회의 수임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후원회의 대표자가 맡는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의결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대표자 직무대리자의 선출 및 총무 선임
5. 업무보고의 승인
6. 회원의 제명 결의
7.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13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임원

- 제15조(대표자) ① 후원회에 대표자(회장) 1인을 둔다.
② 대표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자는 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 대표자의 궐위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총무) ① 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무를 둔다.
② 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하고 대표자를 도와 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 제17조(회계책임자) ①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자가 선임하며 총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회계책임자 사고시에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가 위임받은 회계지출만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지체없이 새로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18조(감사) ① 후원회의 회계 및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6장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제19조(회비)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21조(모금의 제한) 본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상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기부) ① 후원회는 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법」의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까지 기부할 수 있다.

② 본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기부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장 해산

제23조(해산) 후원회는 다음 사유가 생긴 때에는 해산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지정을 철회한 경우
2.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경우
4. 기타의 사유발생시 후원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잔여재산 처분)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정치자금법」 제21조에 따라 처분한다.

제8장 정관개정

제25조(개정)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사항)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서식 11

취 임 동 의 서		
성 명	○○○ (한 자 :)	
주 소	○○시 ○○구 ○○로 1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자택) 02-123-8910	(휴대전화) 010-1234-5789
<p>본인은 국회의원○○○후원회의 대표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2024년 월 일</p> <p>성 명 ○ ○ ○ (서명 또는 날인)</p> <p>국회의원○○○후원회 귀중</p>		
주.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해당 후원회에 제출함.		

서식 12

인 영 서	
명 칭	국회의원○○○후원회
회 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0 auto; width: 80%;">국회의원○○○후원회인</div>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국회의원○○○후원회인
대표자 직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0 auto; width: 80%;">국회의원○○○후원회 대표자인</div>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국회의원○○○후원회대표자인
비 고	

- 주 1. 후원회의 등록시 또는 이미 등록된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시 사용함.
 2. 인영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 뚜렷하게 붉은 색으로 날인함.

서식 13

후원회 (지정)·(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칭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의소재지	○○시 ○○구 ○○로 1	전화번호	02-523-1234	
대표자	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도 ○○시 ○○길 11	전화번호	02-270-1234
지정·(지정철회)연월일	2024년 월 일			
<p>「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지정철회)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의원 ○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의원○○○후원회 귀중</p>				
<p>주 : “명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함.</p>				

서식 14

국회의원○○○후원회 결성 회의록

일시 : 2024년 월 일 ○○:○○

장소 : ○○컨벤션센터 ○층 ○○○호

국회의원○○○후원회

기록자 ○○○ 인

확인자 ○○○ 인

원본대조필	인
-------	---

식 순

1. 개 회 (성원현황 등 포함)
2. 국민의례
3. 경과보고
4. 임시의장 선출
5. 후원회 정관 채택
6. 대표자(회장) 등 임원 선출
7. 폐 회

원본대조필

인

국회의원○○○후원회 결성 회의록

1. 개 회

사회자 :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후원회 결성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적회원 총 20명 중 18명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회의원○○○후원회의 결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 국민의례

사회자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과보고

사회자 : 다음은 국회의원○○○후원회 결성식을 개최하기까지의 진행경과를 후원회 준비 위원인 ○○○ 회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시의 한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하여 ○○○ 국회의원의 원활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하여 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 지난 ○월 ○일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뜻을 같이하는 20명이 참여하여 오늘 후원회 결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원님들께서 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다음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선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후원회 결성에 많은 노력을 하신 ○○○ 회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 전원 박수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

원본대조필	①
-------	---

5. 후원회 정관 채택

임시의장 : 그러면 먼저 후원회 정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정관을 검토하고 오셨으리라 보고 정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석 자 : 이의 없습니다.

임시의장 : 그러면 국회의원○○○후원회의 정관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표자(회장) 등 임원 선출

임시의장 : 다음은 정관에 따라 본 후원회를 이끌어 나갈 대표자와 감사를 선출하고, 총회의 수임기관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운영위원들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 대표자에는 지금까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원회설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 회원을 추천하고, 감사에는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 회원님과 ○○○ 회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 ○○○, ○○○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의장 : ○○○ 회원님으로부터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석 자 : (전원 손을 들면서) 동의합니다.

임시의장 : 그러면 후원회 대표자에는 ○○○ 회원을, 감사에는 ○○○, ○○○ 회원을, 운영위원에는 ○○○, ○○○, ○○○ 회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 후원회 대표자로 선출되신 ○○○ 회원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부족한 저를 대표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 국회의원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금 모금 및 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 폐회

사회자 : 이상으로 국회의원○○○후원회 결성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본대조필

㉠

서식 15

후원회 사무소 소재지 약도	
명 칭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주소	○○시 ○○구 ○○로 1
전 화 번 호	02-123-4567
[약 도]	

서식 16

후원회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 칭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로 1	전 화 번 호	123-4567	2024.4.30	이사							
대표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 인 의 인 영												
<p>「정치자금법」 제7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을)·(변경신고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국회의원○○○후원회 대표자 직인</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1. 정관 또는 규약 1부.</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td> </tr> <tr> <td style="padding: 5px;">3. 인영서 1부.</td> <td style="padding: 5px;">4. 회의록 사본 1부.</td> </tr> <tr> <td style="padding: 5px;">5. 사무소 소재지 약도 1부.</td> <td></td> </tr> </table>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인영서 1부.	4. 회의록 사본 1부.	5. 사무소 소재지 약도 1부.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인영서 1부.	4. 회의록 사본 1부.											
5. 사무소 소재지 약도 1부.												
<p>주 1. “변경내용”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p> <p>2. “명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기재함.</p> <p>3. 인영서는 서식 제9호의 <별지>에 따름.</p> <p>4. 회의록 사본은 「정치자금법」 또는 정관(규약)의 규정에 의한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의결에 따라 후원회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첨부함.</p> <p>5.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 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p>												

서식 17

후원회 (가입)·(탈퇴)원서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시 ○○구 ○○로 1			
직 업 (근무처)	회사원(○○상사)			
연 락 처	자택	02-123-5678	휴대폰	010-123-4567
	직장	02-237-5698	E-mail	
회비약정	납부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금계좌입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금10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p>본인은 국회의원○○○후원회에 (가입)·(탈퇴)하고자 이에 (가입)·(탈퇴)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가입)·(탈퇴)연월일 : 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 ○ ㉠</p> <p>국회의원○○○후원회 귀중</p>				
<p>주 1. 회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및 전화번호) 외에는 후원회에서 임의로 서식을 작성할 수 있음.</p> <p>2. 회원의 가입·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p>				

서식 18

후원회 회원 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가입 연월일	탈퇴 연월일	비고
1	○○○	69.12.12	○○시 ○○구 ○○로 111	자영업	123-1234	'24.6.18.		
2	○○○	89.10.29	○○시 ○○구 ○○로 11	학생	345-2478	'24.6.18.		
3	○○○	56.01.27	○○도 ○○시 ○○로 1	자영업	503-1700	'24.6.18.		
4	○○○	71.09.11	○○도 ○○시 ○○로 52	회사원	512-1237	'24.6.18.	'24.7.21.	
5	○○○	62.12.17	○○시 ○○구 ○○로 79	지방의원	523-1219	'24.6.19.		
6								
7								
8								
9								
10								
11								
12								
13								
14								

주 : 회원의 가입·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19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서

문서번호 : 국회의원○○○후원회-1

1.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내역 (단위: 매)

구분	기수령 매수			후원회의 사용내역		발급신청 매수
	전년도이월	금년도수령	소계	발행	미발행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1만원권	10	10	8	2	10
	5만원권	10	10	1	9	
	10만원권	600	600	600		490
	50만원권					
	100만원권					10
	500만원권					
	소계		620	620	609	11

2. 신청일전일까지의 수입·지출총액 (단위: 원)

수입			지출			비고
전년도 이월액	후원금	합계	기부금	제경비	합계	
	50,940,000	50,940,000	40,000,000	10,940,000	50,940,000	

3. 수입인지 : 20,400원 상당

「정치자금법」 제17조제6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국회의원○○○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비용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이 신청서의 뒷면에 첨부함.

서식 20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대장

연월일	적요	구분	수령(발행) 또는 반납							잔고							
			정액 영수증							무정액 영수증	정액 영수증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소계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소계
2024. 3.2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령	매수			300	50	100		450			300	50	100		450	
		일련번호			라가 1 ~ 300	마가 1 ~ 50	바가 1 ~ 100					라가 1 ~ 300	마가 1 ~ 50	바가 1 ~ 100			
		금액			3,000	2,500	10,000		15,500			3,000	2,500	10,000		15,500	
“	○○○에게 위임	매수			70	10	15		95			230	40	85		355	
		일련번호			라가 1 ~ 70	마가 1 ~ 10	바가 1 ~ 15					라가 71 ~ 300	마가 11 ~ 50	바가 16 ~ 100			
		금액			700	500	1,500		2,700			2,300	2,000	8,500		12,800	
2024. 4.22	○○○에게 발행	매수					2		2			230	40	83			
		일련번호						바가 16 ~ 17				라가 71 ~ 300	마가 11 ~ 50	바가 18 ~ 100			
		금액						200		200		2,300	2,000	8,300		12,600	
2024. 4.28	○○○로부터 반납	매수			20		5		25			250	40	88		378	
		일련번호			라가 51 ~ 70		바가 11 ~ 15					라가 51 ~ 300	마가 11 ~ 50	바가 11~15 18~100			
		금액			200		500		700			2,500	2,000	8,800		13,300	

주 1. 후원회가 연도별로 작성·기재함.
 2. “적요”란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 “○○○에게 발행”, “○○○에게 위임” 또는 “○○○으로부터 반납” 등으로 기재함.

서식 21

정치자금영수증 잔여매수(보고)·(반납보고)서

문서번호

1. 사용기간 :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2. 세부내용

구분	전년도 이월 및 금년도 수령매수		사용		잔여매수		
	매수 (일련번호)	금액	매수 (일련번호)	금액	매수 (일련번호)	금액	
무정액 영수증	매 ()		매 ()		매 ()		
정액 영수 증	1만원권	매 () 원	매 () 원		매 () 원		
	5만원권	매 () 원	매 () 원		매 () 원		
	10만원권	300매 (라가 1~300)	30,000,000원	50매 (라가1~50)	5,000,000원	250매 (라가51~300)	25,000,000원
	50만원권	50매 (마가1~50)	25,000,000원	10매 (마가1~10)	5,000,000원	40매 (마가11~50)	20,000,000원
	100만원권	100매 (바가1~100)	100,000,000원	12매 (바가1~10 16~17)	12,000,000원	88매 (바가11~15 18~100)	88,000,000원
	500만원권	매 () 원		매 () 원		매 () 원	
	계	450매	155,000,000원	72매	22,000,000원	378매	133,000,000원

「정치자금법」 제17조제10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월 일 현재까지의 정치자금영수증의 잔여매수를 위와 같이 (보고)·(반납)합니다.

2024년 월 일

국회의원○○○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일련번호는 “매수”란 하단 ()에 기재함.

2. 잔여매수 반납보고는 후원회가 해산하는 때에 함.

서식 22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1. 수임자 인적사항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비고
1	○○○	-	○○시 ○○구 ○○로 20	무직	02-523-1234	

2.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반납 및 후원금 납입내역

(단위: 만원)

연월일	적요	구분	교부 및 반납							잔고							후원금 납입액	비고	
			정액 영수증							정액 영수증									
			무정액영수증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소계	무정액영수증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2024 3.24	교부	매수			70	10	15	95											
		일련번호			라가 1~70	마가 1~10	바가 1~15		-										-
		금액			700	500	1,500	2,700											
2024 4.22	후원금 납입	매수			50	10	10	70				20		5		25			
		일련번호			라가 1~50	마가 1~10	바가 1~10		-			라가 51~70		바가 11~15			-	2,000	
		금액			500	500	1,000	2,000				200		500		700			
2024 4.24	반납	매수			20		5	25											
		일련번호			라가 51~70		바가 11~15		-										-
		금액			200		500	700											
		매수																	
		일련번호							-										-
		금액																	

주 1. 연도별, 수임자별로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함.

2. “적요”란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반납” 또는 “후원금 납입” 등으로 기재함.

서식 23

위 임 장

1. 위임자

후원회명	대표자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국회의원○○○ 후원회	○○○	○○시 ○○구 ○○로 11	02-123-4567	

2. 수임자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비고
1	○○○	-	○○시 ○○구 ○○로 20	무직	02-523-1234	

「정치자금법」 제16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임자 국회의원○○○후원회 대표자

직인

수임자

○ ○ ○

㉠

서식 25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

문서번호

국고귀속대상 후원금내역	납부연월일	금액(단위: 원)	비고
타인명의로 납부된 후원금	2024. 3. 29.	300,000	
	소 계	300,000	
가명으로 납부된 후원금			
	소 계		
익명기부한도액 초과 후원금			
불 법 후 원 금	2024. 3. 26.	1,000,000	
합 계		1,300,000	

「정치자금법」(제11조제4항)·(제18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대상(후원금)·(불법후원금)의 내역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월 일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1.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 연락소를 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연락소 재산내역을 포함하여 작성

재산명세서의 각 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며 재산내역을 명세서상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첨부하여야 함.

구분	작성내용
토지	후원회사사무소부지 등 용도별 내역을 기재함.
건물	후원회사사무소 등 후원회 소유분에 한하여 기재함. ※ 전세금 등의 경우는 '그 밖의 재산' 란에 기재함.
주식 또는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는 주식, 국·공채등 해당증권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함.
비품	책상, 의자, 복사기, 전화기 등을 기재하며, 일회용 소모품은 제외함.
현금 및 예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을 기재하되, 수입·지출명세서상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각 계좌에 대한 잔액내역 기재(별지작성 가능)
그 밖의 재산	각종 임차재산의 임차금액(보증금, 전세금등), 차입금(변제후 잔액), 예술공예품(도자기, 액자 등), 기타 무형재산 등을 기재함.
수량	토지·건물의 경우는 면적(m ²)을, 주식 또는 유가증권 및 비품의 경우는 보유수를 기재하되 특히 비품의 경우 종류가 많을시 ○○외 ○○점으로 기재하고 별지에 그 내역을 작성·첨부하고, 기타의 경우 물품은 보유수를 기재함.
내용	토지의 경우 지번·지목(대지, 전, 답, 임야등)·지적, 건물의 경우 지번·형(목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등)·동수·건물의 면적(m ²),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증권의 권면역을 상세히 기재함.
가액	회계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재산의 현시가(시가산정 불능 시에는 구입가격 또는 평가액)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비품의 경우는 그 취득가격을 기재함.

2.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1)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과목별 총액을 기재함.

(2) 수입부문의 작성

- ‘전년도 이월’란에는 전년도 수입·지출명세서상의 잔액을 기재하며 해당 연도 중 등록된 경우 『0』으로 기재함.
- ‘후원금’란에는 기명과 익명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그 밖의 수입’란에는 예금이자 등 ‘전년도 이월’, ‘후원금’을 제외한 수입을 기재함.

(3) 지출부문의 작성

- ‘기부금’란에는 후원회를 지정한 국회의원에게 기부한 기부금을 기재함.
- ‘후원금 모금경비’란에는 금품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광고비, 안내장 발송비 등)만을 기재함.
- ‘기본경비’란에는 후원회가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인건비와 사무소설치·운영비로 구분하여 기재함.
- ‘그 밖의 경비’란에는 후원회의 설립비용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 경비 등을 기재함.

3. 수입·지출부

(1) 표지와 내지로 구분·작성하되 내지에는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모든 수입·지출내역을 과목별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 (2) 지출연월일·적요 등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영수증 일련 번호』를 다음 예시와 같이 과목별·지출일자별로 부여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이라고 기재함.

[예시]

- 기 부 금 : 기-1, 기-2, ………
- 후원금모금경비 : 모-1, 모-2, ………
- 인 건 비 : 인-1, 인-2 ………
- 사무소설치·운영비 : 사-1, 사-2, ………

- (3) 지출일자와 실제 영수증 수령(발급)일자가 상이하여 수입·지출부와 영수증의 지출일자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은 바, 가급적 영수증을 지출일자에 수령(발급)함으로써 지출일자를 일치시켜 처리함.

- (4) 지출부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일자가 다른 여러 건을 한 건으로 처리해서는 안됨.

4.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1) 지출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을 말함.
- (2) 수령증에는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3) 모든 지출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1건의 지출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수증 등은 구비·보관하여야 함.

5. 후원금 기부자 명단

- (1) 회계책임자는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매 회계보고시 보고하여야 함.
- (2) 후원금 기부자 명단 보고시에는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와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로 각각 구분 기재하여 별도로 작성·제출함.
- (3) 상반기 회계보고시에는 그때까지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하반기(정기회계보고) 회계 보고시에는 상반기를 포함한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전체를 보고하여야 함.
※ 1회 30만원 기부자, 연간 300만원 기부자는 포함 안됨.

6.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1) 수입·지출용으로 사용한 예금통장의 사본(수입통장은 1개 이상일 수 있으나 지출통장은 1개뿐임)을 제출하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점장 등의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2) 보고대상 기간 중 대표자·회계책임자 등의 변경이 있어 새로운 예금통장을 개설·사용한 경우 변경전 예금통장을 포함 모든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7.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 (1) 감사의견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감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를 감사의견서로 인정할 수 있음.

- (2) 감사의견에는 후원회의 회계처리가 「정치자금법」 및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 (3) 감사자의 직위 등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에서 임시감사기관을 구성하여야 함.

8.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

- (1) 심사·의결서는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심사·의결하였음을 나타내도록 하고, 후원회의 정관·규약 상에 규정된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의 명칭 및 심사·의결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2)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확인해야 함.
- (3) 세부내역은 회계보고시 제출하는 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의결서의 내용에 명시하여야 함.

9. 잔여재산의 인계·인수서(사유발생시)

- (1)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기 전까지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소속 정당에, 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함.
- (2) 후원회가 해산된 후에 기부된 후원금은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이를 반환하되, 회계보고 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 작성예시 】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작성예시

1 회계보고서 제출문서(예시)

국회의원○○○후원회

문서번호 회계 2025 -

시행일자 2025. . . .

수 신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2024년도 하반기 정기회계보고서 제출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라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1부.
2.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1부.
3. 과목별 수입부 각 1부.
4. 과목별 지출부 각 1부.
5.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6. 후원금 기부자 명단
가.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1부.
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1부.
7.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8.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1부.
9. 대의기관(또는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 1부. 끝.

국회의원○○○후원회 대표자 ○ ○ ○ (인)

2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구분	종류	수량	내용	가액	비고
토지	후원회사사무소부지	800㎡	삼성동16, 대지	20,000,000	
	소계	800㎡		20,000,000	
건물	후원회사사무소	600㎡	삼성동16,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10,000,000	
	소계	600㎡		10,000,000	
주식 또는 유가증권		해	당	없	음
	소계				
비품	복사기 등	14점	<별첨>	8,000,000	
	소계	14점		8,000,000	
현금및예금	예금		농협 000-00-000	4,198,000	
	소계			4,198,000	
그 밖의 재산					
	소계				
합계				42,198,000	

작성연월일 : 2025년 월 일

첨부 : 비품내역 부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 인)

주 : 1. 재산내역을 본 명세서상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첨부하여야 함.

2. “현금 및 예금”은 후원회의 수입·지출명세서상의 잔액을 기재함.

3. 연락소를 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연락소 재산내역을 포함시켜야 함.

2-1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비 품 내 역

종류	수량	내용	가액	비고
복사기	1	선명한 500	1,000,000	
책 상	3	철제양수	600,000	200,000×3
의 자	3		300,000	100,000×3
개인용컴퓨터	2	오보OA 3000	3,000,000	1,500,000×2
프 린 터	2	오보SP 2800	1,000,000	500,000×2
응접세트	1	편안한 SET	600,000	
금 고	1	절대안전 600	500,000	
텔레비전	1	금성 WONDER	1,000,000	
∴	∴	∴	∴	
합 계	14		8,000,000	

주 : 본 비품내역은 재산명세서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함.

3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

구분	과목		금액	비고
수입	전년도이월		4,000,000	
	후원금	기명	82,000,000	
		익명	3,000,000	
		소계	85,000,000	
	그 밖의 수입		1,000,000	
	합계		90,000,000	
지출	기부금		70,000,000	
	후원금 모금경비		500,000	
	기본 경비	인건비	7,00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302,000	
		소계	7,302,000	
	그 밖의 경비		8,000,000	
합계		85,802,000		
잔액			4,198,000	

작성연월일 : 2025년 월 일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 인

4 후원회의 수입부

〈 표지 〉

2024년도 하반기
국회의원○○○후원회
회 계 보 고

후 원 회 의 수 입 부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 ○ ○ 인

〈 내지 〉

[과목명: 기명후원금]

(단위: 원)

연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액	누계	비고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24.7.14	후원금	11건					500,000	500,000	
'24.8.14	후원금	홍길동	66.06.01	○○도 ○○시 ○○로 2	○○상사 판매과장	02- 523-6485	400,000	900,000	
'24.9.15	후원금	6건					100,000	1,000,000	
	∴	∴	∴	∴	∴	∴	∴	∴	
합계								82,000,000	

작성연월일 : 2025년 월 일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 인

주 : 수입부는 수입·지출총괄표의 수입 과목별[전년도 이월, 후원금(기명, 익명), 그 밖의 수입]로 작성함.

5 후원회의 지출부

〈표지〉

2024년도 하반기
국회의원○○○후원회
회 계 보 고

후 원 회 의 지 출 부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 ○ ○ 인

〈 내지 〉

[과목명: 사무소설치·운영비]

(단위: 원)

연월일	지출을 받은 자					금액	누계	영수증 일련 번호
	내역	성명(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24.7.15	복사지외5	(주)경성	654-98- 9876543	○○시○○로 654	문구 제조	120,000	120,000	1
'24.7.20	볼펜외2	○○○	456-98- 000000	○○구○○로 456	문구 도소매	32,000	152,000	생략
'24.11.10	책상구입	○○○	546-00- 0000000	○○구○○로 546	가구 대리점	150,000	302,000	2
∴	∴	∴	∴	∴	∴	∴	∴	∴
합계	-	-	-	-	-	302,000	302,000	-
내 역	영수증 첨부분	-	-	-	-	-	270,000	2건
	영수증 생략분	-	-	-	-	32,000	-	1건

작성연월일 : 2025년 월 일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 ㉠

주 : 1. 지출부는 수입·지출총괄표의 지출 과목별[기부금, 후원금 모금경비, 기본경비(인건비, 사무소설치·운영비), 그 밖의 경비]로 작성함.

2. 영수증 첨부분 및 생략분 란에는 각각의 총건수를 기재함.

6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표지〉

2024년도 하반기
국회의원○○○후원회
회 계 보 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 ○ ○ 인

〈 내지 〉

[과목명: 사무소설치·운영비]

<p>(증빙서번호) 사-1</p>	<p>[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작성예시 참조]</p> <p>사-2</p>	<p>사-3</p>
------------------------	--------------------------------------------	------------

- 주 : 1. 영수증의 크기에 따라 1면(A4용지사용)에 적정매수를 첨부하여야 함.
 2. 증빙서 번호는 지출부 영수증일련번호란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지출과목별·지출일자별로 별도로 부여하여야 함.
 3. 증빙서류는 축소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함(축소한 경우 영수증을 알아 보기가 어려움).

7 후원금 기부자 명단(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후원금 기부자 명단

[구분: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기부자					기부일자	기부금액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	1944.01.12.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23	□□기업 과장	031-123-1234	2024.7.1	400,000	
◇◇◇	1958.02.05.	군포시 엘에스로 143 ○○아파트 ○동 ○호	(주)◇◇ 전무	031-321-4321	2024.7.2	500,000	
□□□	1978.07.05.	서울 동작구 만양로 112 ○○빌라 ○호	○○은행 부장	02-456-7890	2024.9.3	1,000,000	
△△△	1968.12.05.	과천시 별양로 12 □□아파트 □동 □호	△△산업 재무부장	02-543-2109	2024.9.4	1,200,000	
⋮	⋮	⋮	⋮	⋮	⋮	⋮	⋮

「정치자금법」 제40조제3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후원금의 기부자 명단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월 일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회 3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는 “구분”란에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로 각각 구분 기재하여 별도로 작성·제출함.

7-1 후원금 기부자 명단(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후원금 기부자 명단

[구분: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성명	생년월일	기부자			기부일자	기부금액	비고
		주소	직업	전화번호			
○○○	1944.01.12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23	○○은행 부장	031- 123-1234	2024.2.1	3,100,000	
◇◇◇	1958.02.05.	군포시 엘에스로 143 ○○아파트 ○동 ○호	(주)◇◇ 전무	031- 321-4321	2024.2.2	5,000,000	
□□□	1978.07.05.	서울 동작구 만양로 112 ○○빌라 ○호	변호사	02- 456-7890	2024.2.3	5,000,000	
△△△	1953.02.15.	과천시 별양로 12 □□아파트 □동 □호	△△산업 재무부장	02- 543-2109	2024.2.4	1,500,000	
△△△	1953.02.15.	과천시 별양로 12 □□아파트 □동 □호	△△산업 재무부장	02- 543-2109	2024.2.5	1,800,000	
●●●	1962.07.22.	대구 북구 동천로 12 ○○아파트 ○동 ○호	▼▼산업 (주)대표	053- 924-7654	2024.2.7	500,000	
●●●	1962.07.22.	대구 북구 동천로 12 ○○아파트 ○동 ○호	▼▼산업 (주)대표	053- 924-7654	2024.2.7	1,900,000	
●●●	1962.07.22.	대구 북구 동천로 12 ○○아파트 ○동 ○호	▼▼산업 (주)대표	053- 924-7654	2024.9.7	700,000	
∴	∴	∴	∴	∴	∴	∴	

「정치자금법」 제40조제3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후원금의 기부자 명단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월 일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8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감 사 의 견 서 ①

「정치자금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우리 후원회의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처리내역에 대한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② : 2025. 1. 15. ~ 2025. 1. 17.

나. 감사대상

- 재산상황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

2. 감사의견

「정치자금법」 및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 ③

3. 특기사항 : 없음

2025년 1월 일

감 사 자 ④

(직 위) 감사

(주 소) ○○시 ○○구 ○○로

(성 명) ○ ○ ○ ⑤

주 : ① 감사의견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관·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감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를 감사의견서로 인정할 수 있음.

② 감사기간은 감사대상기간이 아니라 회계보고서를 실제로 감사한 기간을 기재함.

③ 감사의견에는 후원회의 회계처리가 “정치자금법 및 동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적합한 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④ 감사자의 직위 등은 정관·규약 상에 규정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규약상에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의기관이나 그 수입기관에서 임시감사기관을 구성하여야 함.

9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서

① 원본대조필 인

재산 및 수입·지출상황 등의 심사·의결서②

1. 의결주문

「정치자금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우리 후원회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내역 및 결산내역(내역별첨)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의결한다.

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기간 : 2024. . . ~ 2024. 12. 31.까지

나. 재산 : 42,198,000원

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 수입 : 90,000,000원
- 지출 : 85,802,000원
- 잔액 : 4,198,000원

2025 년 1월 일

국회의원○○○후원회 운영위원회 ③

직위: 운영위원 성명: ○ ○ ○ 인 ④

직위: 운영위원 성명: ○ ○ ○ 인

직위: 운영위원 성명: ○ ○ ○ 인

2. 참고사항 ⑤

가.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1부

나. 심사보고서 1부

주 : ① 사본작성과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후원회대표자 등)의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함.

② 의결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심사·의결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를 의결서로 인정할 수 있음.

③ 후원회의 정관·규약 상에 규정된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④ 심사·의결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

⑤ 세부내역은 회계보고서 제출하는 명세서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

10 잔여재산 인계·인수서

후원회의 잔여재산 인계·인수서

1. 인계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인수자

정당·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인계·인수사항

재 산 목 록	인계·인수방법

「정치자금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국회의원○○○후원회 대표자	○○○	[인]	
	┌ ○○당중앙당 회계책임자	○○○	(인)	┌ ├ └
인수자	├ ○○(공익법인)대표자	○○○	(인)	
	└ ○○(사회복지시설)대표자	○○○	(인)	

주
 1.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1부는 회계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2. 잔여재산 중 금전은 수표나 예금계좌 입금 그 밖의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함.
 3. “인계·인수사항”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1. 재산명세서

재산명세서의 각 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재산내역을 명세서상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첨부하여야 함.

구분	작성 내용
토지	국회의원사무소부지 등 용도별 내역을 기재함.
건물	국회의원사무소 등 국회의원 소유분에 한하여 기재함. ※ 전세금 등의 경우는 '그 밖의 재산' 란에 기재함.
주식 또는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는 주식, 국·공채 등 해당증권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함.
비품	책상, 의자, 복사기, 전화기 등을 기재하며, 일회용 소모품은 제외함.
현금 및 예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을 기재하되, 수입·지출명세서상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그 밖의 재산	각종 임차재산의 임차금액(보증금, 전세금등), 차입금(변제후 잔액), 예술공예품(도자기, 액자 등), 기타 무형재산 등을 기재함.
수량	토지·건물의 경우는 면적(m ²)을, 주식 또는 유가증권 및 비품의 경우는 보유수를 기재하되 특히 비품의 경우 종류가 많을시 ○○외 ○○점으로 기재하고 별지에 그 내역을 작성·첨부하고, 그 밖의 경우 물품은 보유수를 기재함.
내용	토지의 경우 지번·지목(대지, 전, 답, 임야등)·지적, 건물의 경우 지번·형(목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등)·동수·건물의 면적(m ²),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증권의 권면액을 상세히 기재함.
가액	회계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재산의 현시가(시가산정 불능시에는 구입가격 또는 평가액)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비품의 경우는 그 취득가격을 기재함.

주 : 자동차, 컴퓨터, 프린터 등을 구입하고도 재산내역에 누락하는 사례가 있는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닌 비품은 반드시 재산내역에 포함시켜야 함.

2.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1) 수입·지출부는 보조금 계정, 보조금외 지원금 계정, 자산계정, 후원회 기부금계정으로 따로 설정하며,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2)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마다 기재하여야 함.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1) 지출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을 말함.
- (2) 수령증에는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3) 모든 지출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1건의 지출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수증 등은 구비·보관하여야 함.

(4)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편철

- 표지·내지로 구분·작성하여야 함.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계정별·과목별로 구분하여 A4용지를 횡으로 하여 1면에 적정 매수를 첨부하고 그 하단 여백에 증빙서의 관리번호를 기재함.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관리번호는 수입·지출부의 「영수증 일련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4.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1) 수입·지출용으로 사용한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점장 등의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2) 보고대상 기간 중 회계책임자 등의 변경이 있어 새로운 예금통장을 개설·사용한 경우 변경 전 예금통장을 포함 모든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5. 잔여재산의 인계·인수서(사유발생시)

- (1) 처분시기
회계보고[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면직, 사퇴, 사망, 임기만료 등)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전 까지
- (2) 잔여재산의 범위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현금, 후원회기부금 및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한 비품, 후원회기부금 및 정당의 지원금으로 지불한 임차보증금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함.
- (3) 잔여재산 처분방법
정당의 당원인 경우 소속 정당에, 정당의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을 포함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함.

6. 유의사항

회계장부나 회계보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반드시 두 선을 긋고 여백에 『○○자 정정』이라 기재하고 작성자가 날인함(수정액등 사용금지).

【작성예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서 작성예시

1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선거명		선거구명				
국회의원 성명		○○○				
정치자금 수입·지출액						
구분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소계		
자산	0	0	0	0	0	
후원회 기부금	20,000,000	0	15,000,000	15,000,000	5,000,000	
정당의 지원금	보조금	0	0	0	0	
	보조금외	0	0	0	0	
합계	20,000,000	0	15,000,000	15,000,000	5,000,000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합니다.

※ 구비서류

1. 재산명세서 1부.
2.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각 1부.
3.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4.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2025년 월 일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2 국회의원 재산명세서

국회의원 재산명세서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구분	종류	수량	내용	가액	비고
토지	사무실부지	300㎡	대치동 16	20,000,000	
	소계	300㎡		20,000,000	
건물	사무실	200㎡	삼성동16,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10,000,000	
	소계	200㎡		10,000,000	
주식 또는 유가증권		해	당	없	음
	소계				
비품	복사기 등	15점	<별첨>	8,000,000	
	소계	15점		8,000,000	
현금 및 예금	예금		농협 000-00-000	29,000,000	
	소계			29,000,000	
그 밖의 재산					
	소계				
합	계			67,000,000	

작성연월일 : 2025년 월 일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 ①

- 주 : 1. 재산내역은 “후원회 기부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기재함.
 2. 재산내역을 본 명세서상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첨부하여야 함.
 3. “현금 및 예금”은 국회의원의 수입·지출보고서상의 잔액을 기재함.

2-1 국회의원 재산명세서

비 품 내 역

종류	수량	내용	가액	비고
복사기	1	선명한 500	1,000,000	
책상	2	목제양수	700,000	350,000×2
의자	4	특대	600,000	150,000×4
개인용컴퓨터	3	오보OA 3000	3,000,000	1,000,000×3
프린터	2	LAJER 8,000	1,300,000	650,000×2
응접세트	2	편안한 SET	600,000	300,000×2
텔레비전	1	금성 WONDER	800,000	
∴	∴	∴	∴	
합 계	15		8,000,000	

주 : 본 비품내역은 재산명세서에 비품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함.

3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계정명: 후원회기부금

□ 과목명: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단위: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또는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 번호		
2024.7.1	후원회 기부금	5,000,000	5,000,000			5,000,000	○○ 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02-777 -8888		
2024.7.3	의정 보고서 인쇄비			3,000,000	3,000,000	2,000,000	○○기획	112-23 -45678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1	인쇄 기획	02-222 -3456	1	
2024.7.7	○○ 항공권 구입			200,000	3,200,000	1,800,000	○○항공	123-45 -45678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	운송	02-555 -8877	2	
2024.7.15	식대 (수행원 2인)			40,000	3,240,000	1,760,000	○○식당	234-34 -5678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4	임사업	02-222- 3333	3	
∴	∴			∴	∴	∴	∴	∴	∴	∴	∴	∴	
합계													

작성연월일: 2025년 월 일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 인

4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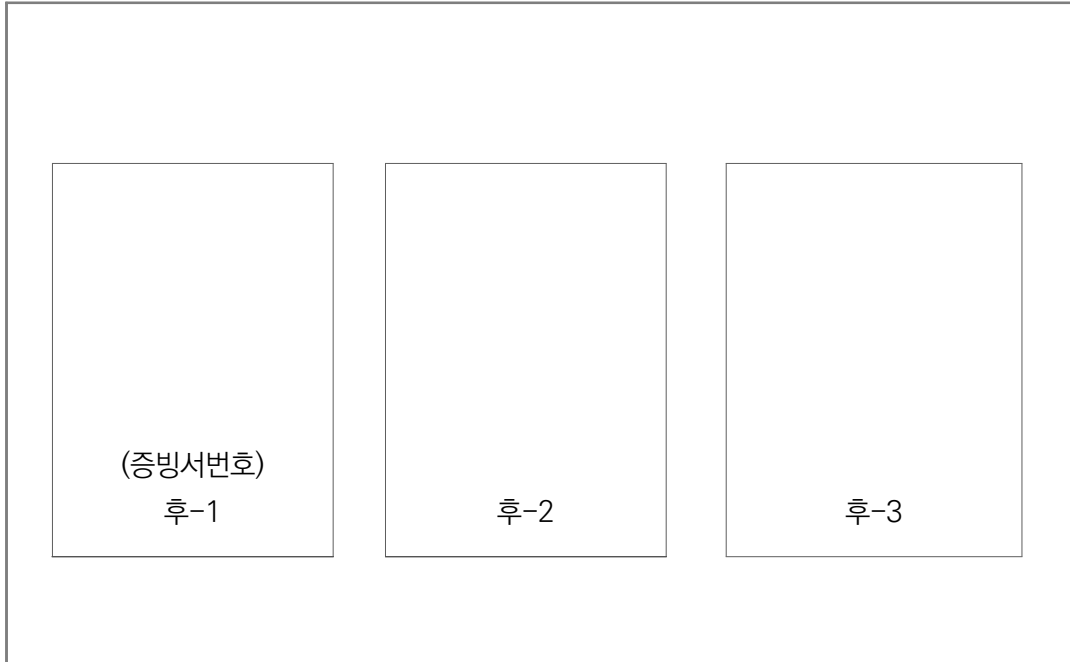
〈표지〉

국회의원○○○
회 계 보 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후원회 기부금)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 ○ ○ 인

〈 내지 〉



※ 영수증 일련번호는 자산계정의 경우 자-1, 자-2,.....로 후원회 기부금계정의 경우 후-1, 후-2,.....로 부여

- 주 : 1. 영수증의 크기에 따라 1면(A4용지사용)에 적정매수를 첨부하여야 함.
2. 증빙서 번호는 지출부 영수증일련번호란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지출과목별·지출일자별로 별도로 부여하여야 함.
3. 증빙서류는 축소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함(축소한 경우 영수증을 알아 보기가 어려움).

후원회 등록 및 정치후원금센터 등록신청

I. 후원회 등록

〈업무 흐름도〉



1. 후원회 결성

- 주체 : 후원회
- 내용 : 일반단체의 결성과 같이 정관이나 규약 등의 제정과 후원회 창립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의 요건구비

2. 후원회의 지정신청

- 주체 : 후원회의 대표자
- 내용 :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에게 당해 후원회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3. 후원회 지정 및 지정서 교부

- 주체 : 후원회 지정권자
- 내용 : 후원회 지정권자는 자신을 후원할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 지정서를 교부

4. 후원회 등록신청

가. 등록신청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관위에 등록 신청

1) 등록신청사항

후원회의 명칭·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2) 구비서류[서식 9~15]

후원회 등록신청서,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 지정서, 후원회 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나. 후원회의 명칭·사무소 설치

1) 후원회의 명칭 : 국회의원○○○후원회

2) 사무소 설치

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소를 둔 지역구 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음.

다.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후원회의 사무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2인 이내

라. 유의사항

1) 후원회 지정서[서식 13]

후원회가 창립총회를 거쳐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의 제정, 대표자 선임 등 내부기구가 구성되고 후원회로서 제반 구성요건(등록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후원회를 지정

2) 정관 또는 규약[서식 10]

-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명칭·목적 및 소재지
-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
- 대표자·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 또는 규약은 후원회결성 회의시 그 대의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

3) 취임동의서[서식 11]

-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의 회원으로서 후원회결성 회의시 선출
-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겸임 불가

4) 인영서[서식 12]

- 명칭은 당해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
- 회인은 당해 후원회의 명칭에 ‘인’자를 붙여 조각하여 날인
[예: 국회의원○○○후원회인]
- 대표자 직인은 후원회 명칭에 ‘대표자인’을 붙여 조각하여 날인
[예: 국회의원○○○후원회대표자인]

5) 후원회의 회의록[서식 14]

- 후원회의 성립·소멸과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당해 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후원회의 구성원인 회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
- 후원회가 등록·변경등록신청 및 해산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회의록에는 회의개최일시·장소, 성원상황과 부의 안전처리 등 회의진행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날인 필요
-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관계자가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

5.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 신고

가. 회계책임자 신고

1) 선임권자

- 후원회 회계책임자 : 후원회의 대표자
-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2) 회계책임자 선임

- 선임권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서식 1]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1인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
- 신고된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와 정치자금의 수입과지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3)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시에는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서식 2], 정치자금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구비

나. 예금계좌 개설신고

1) 선임권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할 때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개설내역을 반드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금통장사본을 제출

* 정치자금 수입용 계좌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지출용 계좌는 1개만 사용함.

2) 예금계좌는 선임권자(후원회의 경우에는 후원회)의 명의로 개설

II. 정치후원금센터 신규 등록

1. 정치후원금센터 개요

가. 개요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모바일 홈페이지 포함)는 기탁금과 후원금의 모금 및 영수증 발급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치자금 기부 사이트임.

나. 특징 및 편리성

- 후원회관리자 홈페이지(<http://support.give.go.kr:442>) 제공

-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결제 방식 도입
- 후원금센터를 통한 후원금 영수증 발급

다. 정치후원금센터 현황

메뉴	하단 메뉴	내용	비고
기탁금기부	• 기탁금이란?	기탁금의 정의	
	• 기탁금 기부안내	기탁금 기부방법 안내	
	• 기부하기	기탁금 기부하기	
	• 기부내역확인하기	기탁금 기부 내역 조회	
	• 영수증진위여부확인	기탁금 수탁증 진위여부 조회	
	• 기탁문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조회	
후원금 기부	• 후원금이란?	후원금의 정의	
	• 후원금 기부안내	후원금 기부방법 안내	
	• 기부하기	후원금 기부하기	
	• 기부내역확인하기	후원금 기부 내역 조회	
	• 영수증진위여부확인	후원금 영수증 진위여부 조회	
	• 후원회 정보	후원회 기본정보 조회	
	• 후원문의	후원회 사무소 연락처등 조회	
자료마당	• 연말정산·세액공제	연말정산·세액공제 관련 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 자료실	기타 관련 자료 찾기	
	• 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 질문 예시	
	• Q&A	관련사항 문의	
센터이용신청	•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이용신청안내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이용신청안내	

2. 정치후원금센터 기부 등

가. 기부하기

기부 선택	기 부 절 차
후원금 후원	개인정보이용동의 → 후원회 선택 → 본인인증 → 개인정보 입력 → 후원금액 입력 → 결제수단선택 → 결제

나. 결제방법 선택

- 결제방법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실시간 계좌이체·휴대폰 결제·카카오페이 결제·페이코 결제 등

※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 결제(국민, BC, 농협,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우리) 본인 소유의 포인트만 기부하거나, 포인트가 기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가능

- 영수증(수탁증) 발급 및 수수료

구분		영수증 등 발급 소요기간	수수료	비고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토스	결제 후 10일 정도	1.6% ~ 2.8%	매출 규모별 차등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 후 10일 정도	1.3% ~ 1.5% (최저 150원/건)	이체건수별 차등
휴대폰		결제 후 60일 정도	7.0%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결제 후 10일 정도	1.7% ~ 2.4%	매출 규모별 차등
	페이코	결제 후 10일 정도	2.19%	신용카드, PAYCO포인트
1.3636%			간편계좌	

다. 영수증 출력(후원인)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 후원내역 조회 ⇒ 개인정보 입력후 공인
인증서 확인 ⇒ 영수증 출력
- ※ 세액공제 : 후원회에서 후원금 확정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3. 정치후원금센터 등록절차

가.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
 -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 게시장소 : 홈페이지 자료공간 > 선거·법규·정당 > 자료공간
 -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신청서, 전자결제 신청서(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
및 통장사본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나. 신청서 원본과 후원회 입금통장 사본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

-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다. 등록이 완료되면 위원회담당자가 신청 후원회에 계정정보를 안내

- 정치후원금센터 후원회 관리자 매뉴얼은 시스템 로그인 후 관리자게시판
에서 다운로드 가능

정치후원금센터 사이트 이용신청서

구 분		계재내용	비고
후 원 회 명		국회의원○○○후원회	
정 당 명		소속 정당명 또는 무소속	
선 거 구 명		○○선거구	
후원회	대표자	성 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회 계 책 임 자	성 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이 메 일	
	사무실	주 소	
전화번호			
기부금 수령계좌	은 행 명	은행명	
	예 금 주 명	예금주명	
	계 좌 번 호	선관위에 신고된 후원회 수입용 예금계좌 중 1개 선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 사이트 (이용)·(변경)·(해지)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회의원○○○후원회 대표자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후원인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및 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치후원금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본 프로그램은 입력한 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해 별도의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로그아웃/로그인] 버튼을 통한 종료 시 자동백업 되지 않으므로 자료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백업방법은 「Ⅳ. 프로그램 자료 백업 및 복원」을 참고바랍니다.

-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Ⅰ.1.나.설치방법」으로 이동
- 기존 프로그램에 새로이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경우 「Ⅱ.1.사용기관등록」으로 이동하여 사용기관 등록

목 차

I. 프로그램 설치	149
1.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 150	
II. 프로그램 사용하기	153
1. 사용기관 등록 / 154	
2. 전체메뉴 및 기능 / 156	
III.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계관리	158
1. 수입·지출처 관리 / 159	
2. 수입내역 관리 / 164	
3. 지출내역 관리 / 173	
4. 수입·지출내역 일괄등록 / 182	
5. 재산내역 관리 / 185	
6. 보고서 및 수입·지출부 / 188	
IV. 프로그램 자료 백업 및 복원	196
1. 자료 백업 방법 / 197	
2. 자료 복원 방법 /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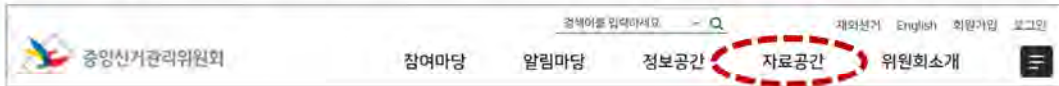
Ⅰ. 회계관리 프로그램 설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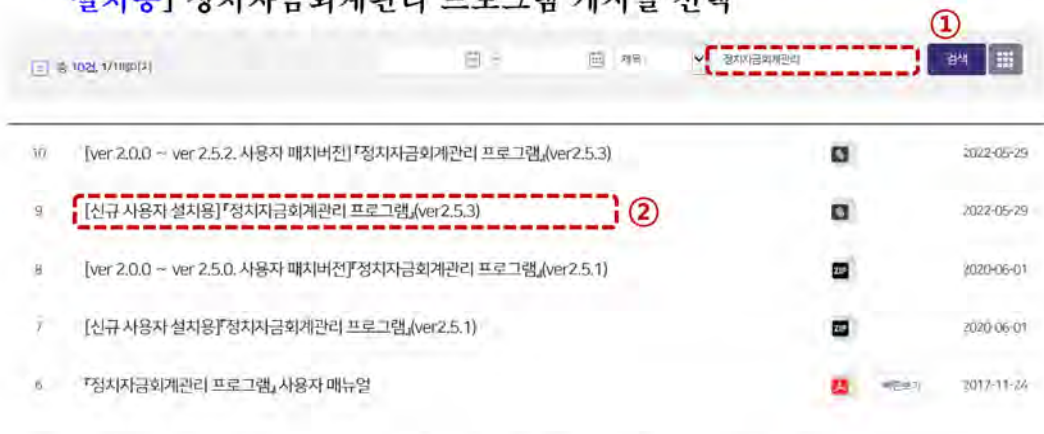
1.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가. 다운로드 방법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접속, 상단의 자료공간 클릭



(2) [자료공간] 화면의 검색란에 [정치자금회계관리] 검색 후 [신규 사용자 설치용]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게시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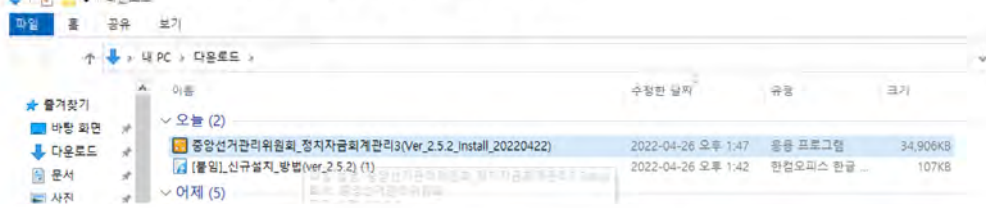
(3) 해당 게시글의 등록일 아래 클립(📎) 아이콘 클릭



(4) ① 클릭



(5) '다운로드' 폴더 내 다운로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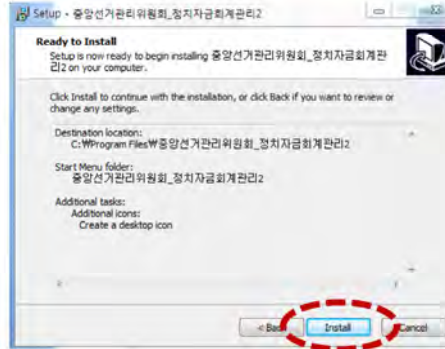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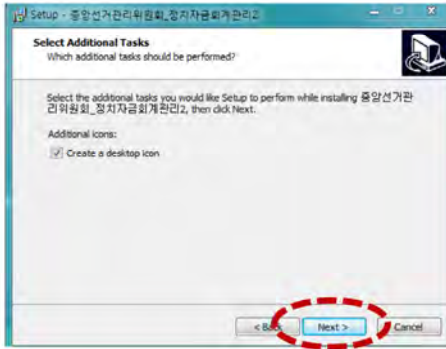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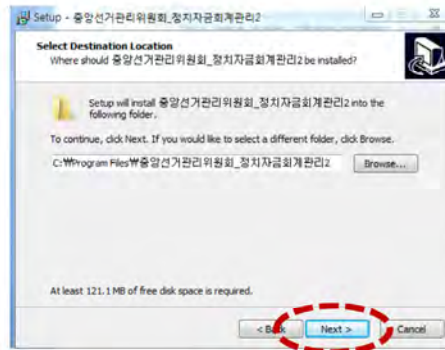
(6) C:\Program Files(x86)에 install 파일 저장



나. 설치방법

(1) install 파일 실행

(마우스 우측클릭 →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선택, 완료 시까지 Next 클릭)



(2)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실행 아이콘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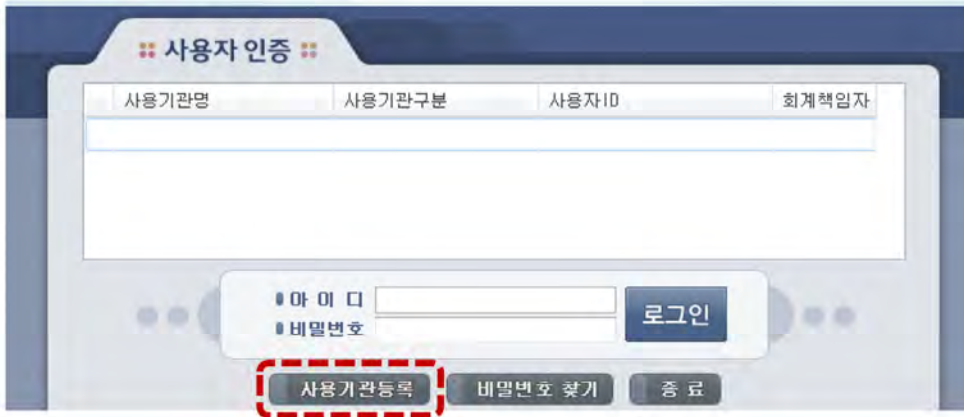
II. 회계관리 프로그램 사 용 하 기



1. 사용기관 등록 (1)

가. 사용기관을 등록하여야만 본 프로그램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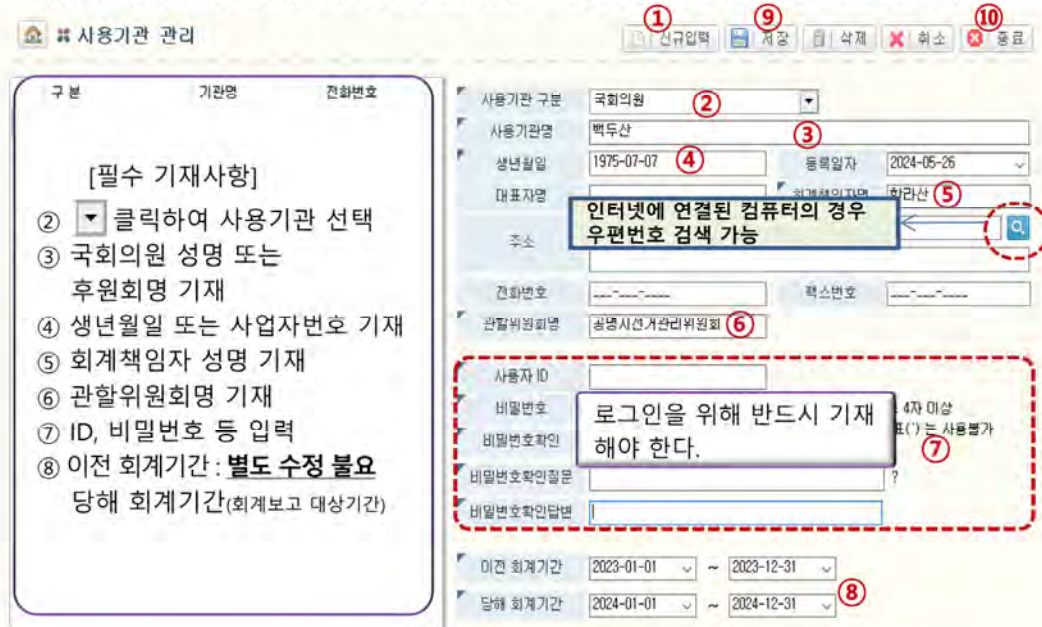
나.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 [사용기관등록] 탭을 클릭하여 해당 국회의원, 후원회관련사항을 입력합니다.

[신규입력]부터 순서대로 클릭하여 작성하며,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증 화면에 사용기관명이 표출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합니다.



1. 사용기관 등록 (2)

가. 기존의 백업파일이 있는 사용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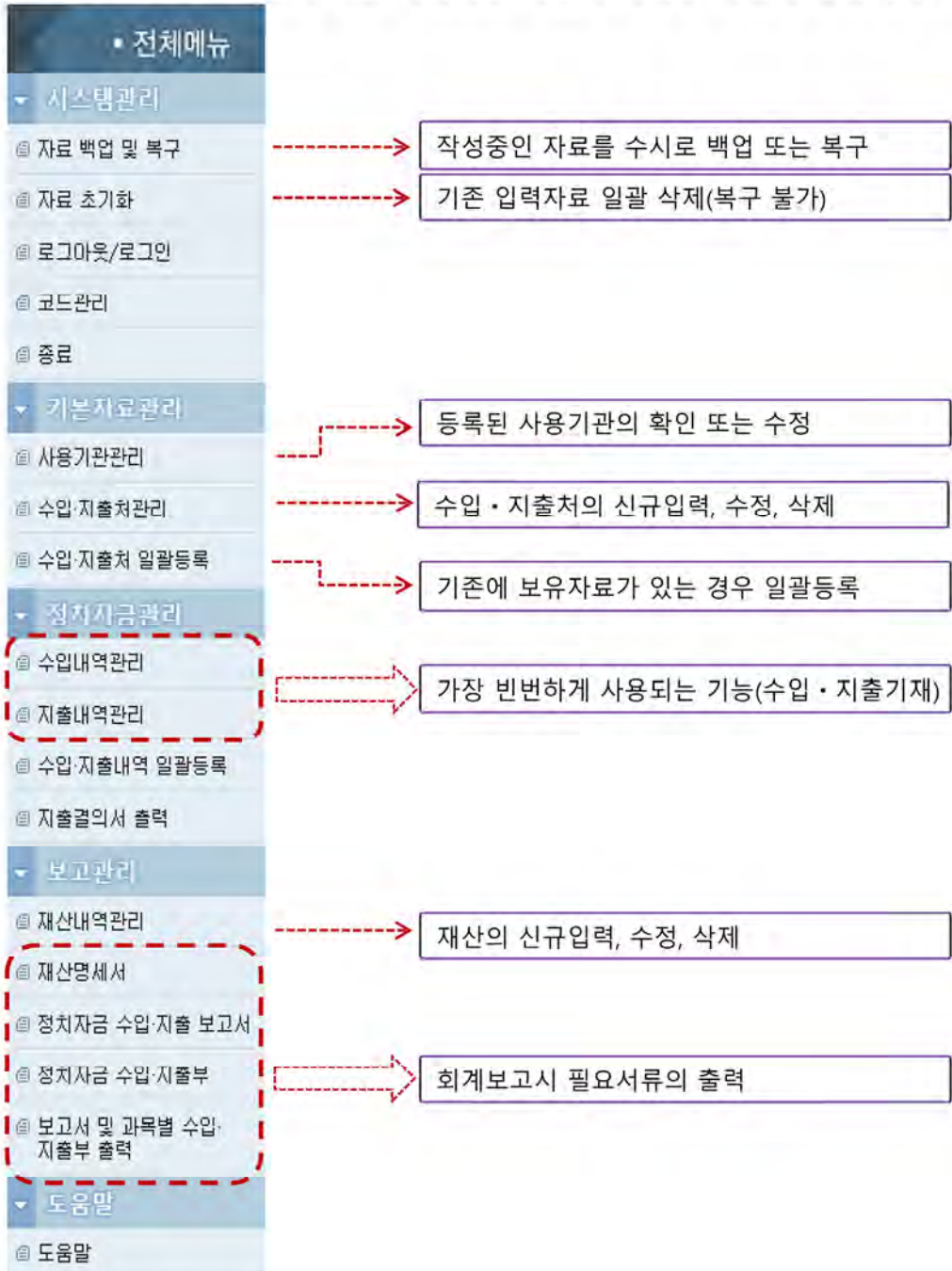
- 백업파일만 가지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자 인증을 하여야 하므로, [사용기관등록] 클릭한 후, 가상의 인물·기관(인적사항 등 임의작성)으로 [사용기관등록]하여 로그인 합니다.
- 「IV.2.자료 복원 방법」을 참고하여 자료를 복원합니다.
- 복구가 완료되면 기존의 사용기관과 사용자ID가 표출되며, 기존의 비밀번호 입력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사용기관이 등록된 컴퓨터에서 다른 사용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국회의원 사무소 컴퓨터에서 후원회 등 다른 사용기관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 아래의 [사용기관 등록]을 클릭한 후 앞페이지를 참고하여 사용기관을 등록합니다. 이 때, 반드시 [신규입력]을 먼저 클릭한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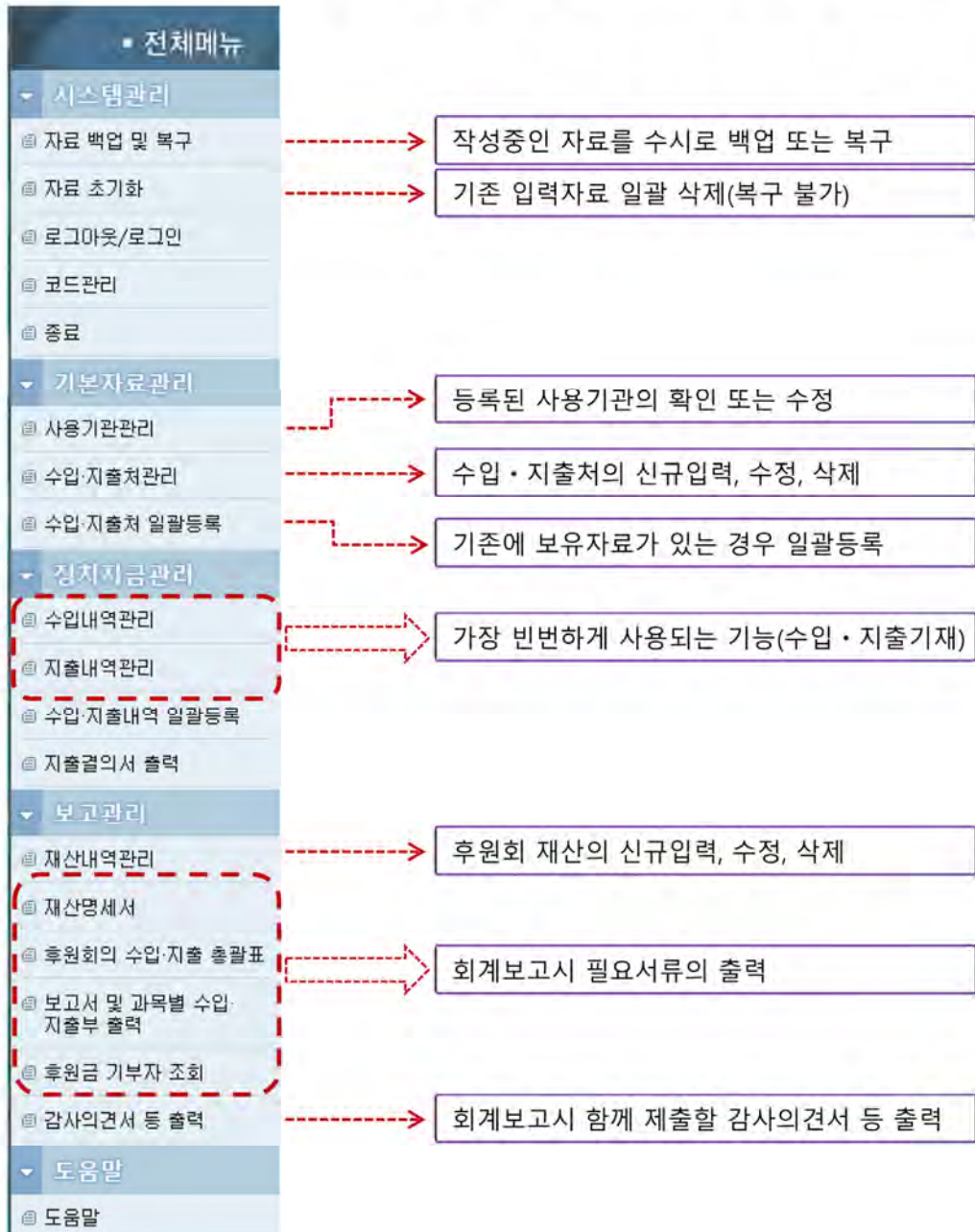
2. 전체메뉴 및 기능 [국회의원용]

전체메뉴는 아래와 같으며 주로 사용하는 메뉴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전체메뉴 및 기능 [후원회용]

전체메뉴는 아래와 같으며 주로 사용하는 메뉴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Ⅲ.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 계 관 리



1. 수입·지출처 관리

가. 수입·지출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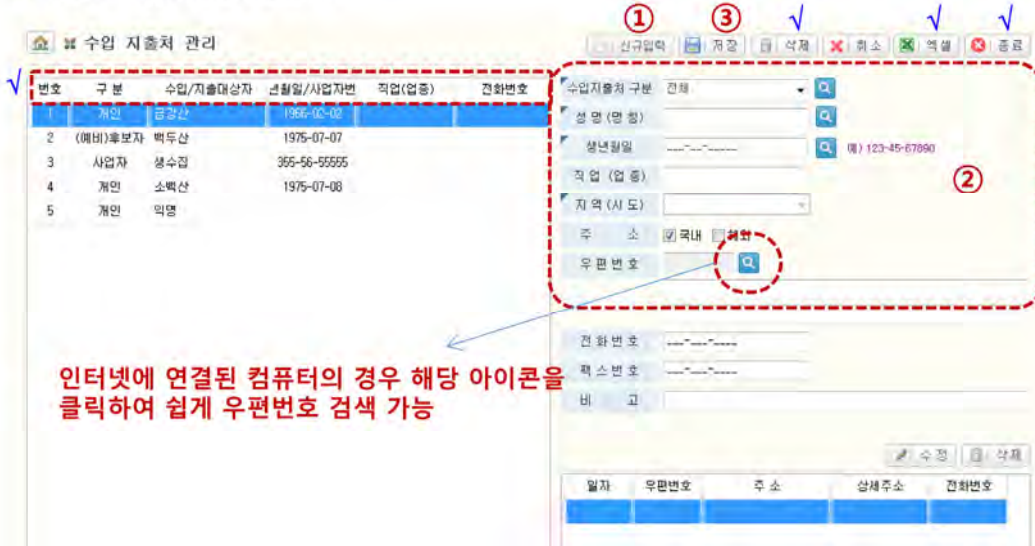
● 해당화면의 주요기능

- ★ 이 화면에서 수입·지출처를 새로 등록하고 수입·지출 상대방의 이력(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일종의 주소록 기능과 유사하며, 수입·지출 내역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인 거래상대방을 수입·지출처로 한번만 등록하면 수입·지출내역 작성시 간편하게 불러내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수입·지출처의 경우,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 관리 화면에서 수입·지출내역 입력시마다 별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입·지출내역 관리 참조)

● 아래의 ① 또는 ②를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



● 수입·지출처 등록화면



● 수입·지출처 등록순서

① 신규입력	메뉴 접속시 기본적으로 신규자료 입력 기능 제공 * 기존 내역이 선택되어 있을 때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려면 ① 신규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② 내용입력	수입·지출처 기재사항을 차례대로 선택 및 입력한다.
③ 저장	수입·지출처를 저장하면 조회화면과 같이 수입·지출처로 등록된다.

● 기타 기능

- √ 조회 : 제목줄 항목별 클릭을 통해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조회 가능
- √ 삭제 : 조회화면에서 선택된 수입·지출처 항목 삭제
* 단, 수입 또는 지출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수입·지출처는 삭제 불가
- √ 엑셀 : 수입·지출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 종료 : 최초의 메인 화면으로 전환

나. 수입·지출처 수정

POINT

★ 수정하고자 하는 수입·지출처를 선택 후 명칭, 사업자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수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등록됩니다.

💡 수입, 지출내역이 등록된 수입·지출처를 수정할 경우 수정된 내용으로 변경됨.

번호	구분	수입/지출대상자	년월일/사업자번호	직업(업종)	전화번호
1	개인	김갑산	1975-05-02		
2	(폐비)후보자	박두산	1975-07-07		
3	사업자	생수집	355-56-55555		
4	개인	소백산	1975-07-08		
5	개인	이름			

일자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전화번호
2024-03-21	13009	경기도 과천시 홍준말로		02-1111-1111
2024-03-29	13009	경기도 과천시 홍준말도		

❶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수정방법

1. 조회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수입·지출처를 선택(파란색으로 변함)한다.
2. ① 항목에서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② [저장]을 누르면 ③ 수정확인 메시지에 따라 수정을 완료한다.

❷ 주소 또는 전화번호 수정방법

1. 조회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수입·지출처를 선택(파란색으로 변함)한다.
2. ④ [수정]을 클릭한다.
3. ① 항목에서 수정사항(주소, 전화번호)을 입력하고 ② [저장] 후 ③ 수정확인 메시지에 따라 수정을 완료한다.
4. 최종 등록정보는 ⑤ 이력 관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수입·지출처 일괄등록(1)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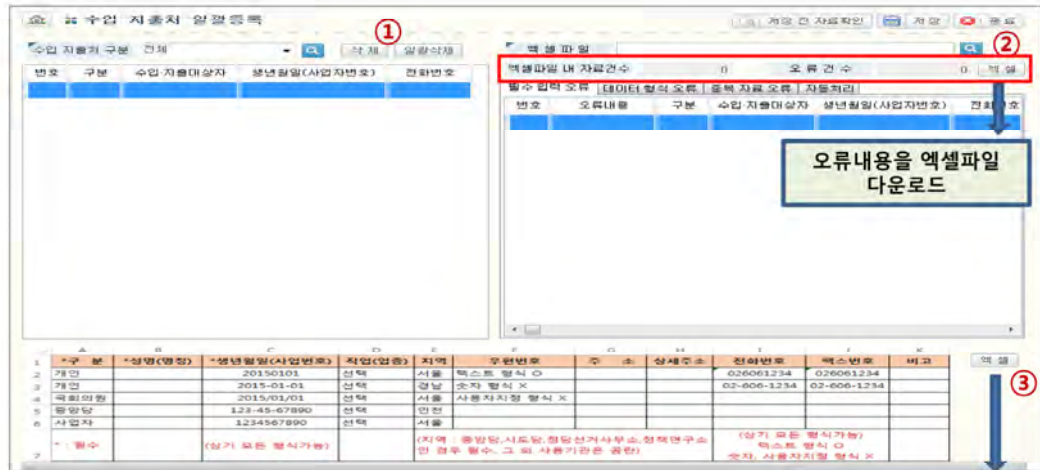
- ★ 수입·지출처를 엑셀 파일로 관리하여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사용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존 사용기관의 수입·지출처를 다른 사용기관에도 함께 사용할 경우 일괄등록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파일 작성시 유의사항이므로 해당 내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수입지출처 일괄등록 순서

① 엑셀파일 찾기	돋보기를 활용하여 수입 및 지출처 목록(엑셀) 파일을 선택한다.
② 저장 전 자료 확인 클릭	엑셀파일로 작성된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한다. => 오류 자료가 있는 경우 [저장] 불가 => 오류 내용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오류수정 후 ①의 순서로 돌아가서 진행
③ 저 장	[저장]시 신규 수입·지출처 자료가 등록되고, 기 등록된 수입·지출처 자료는 엑셀파일 내용으로 수정된다.

다. 수입·지출처 일괄등록(2)



오류내용을 엑셀파일
다운로드

일괄등록 양식을
엑셀파일 다운로드

● 기능 더 알아보기

- ① 수입·지출처 조회자료를 한 건 [삭제] 또는 조회한 모든 자료를 [일괄 삭제] 가능함.
※ 수입내역 혹은 지출내역이 등록된 수입지출처는 삭제 불가
- ② 오류 내용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함.
※ [저장 전 자료확인] 후 오류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는 경우 일괄등록 불가
- ③ [엑셀] 클릭하면 일괄등록 양식의 엑셀파일 다운로드 가능함.



사용기관을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사용기관 등록 후 수입·지출처 자료는 기존 사용기관의 자료를 엑셀 다운로드하여 일괄등록하면 편리합니다.

번호	구분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번호)	직업(업종)	지역	우편번호	주소	생계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1	개인	이민	2015-01-01	선택	서울	026061234	026061234	026061234	02-606-1234	02-606-1234	
2	개인	김남	2015/01/01	선택	경남						
3	제외대상	홍영남	123-45-67890	선택	서울						
4	사업자		1234567890	선택	서울						

수입·지출처 관리에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한 자료(좌측) 중 제목과 번호(노란 부분)를 지운 후, 수입·지출처 일괄등록(1)과 같이 일괄등록합니다.

2. 수입내역 관리

가. 화면 및 기능개관(1)

- ★ 메뉴 접속 시 기본적으로 '신규자료 입력 기능'이 제공됩니다.
- ★ 아래의 화면에서 수입내역 조회 및 신규 수입내역 입력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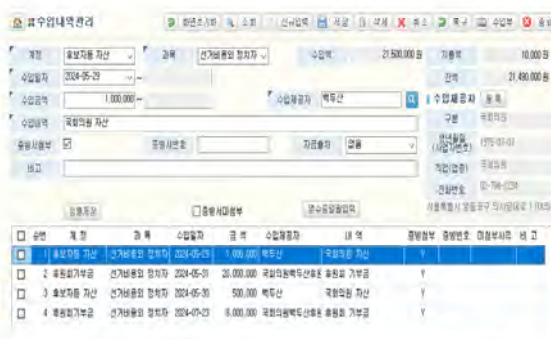
● 아래의 ① 또는 ②를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



● 화면 개관

새자료 (신규 수입내역) 입력시 수입내역 입력 -조회시 조회 조건 입력

새자료를 입력, 저장하면 우측 수입부에 등록 -조회 조건에 따른 조회내역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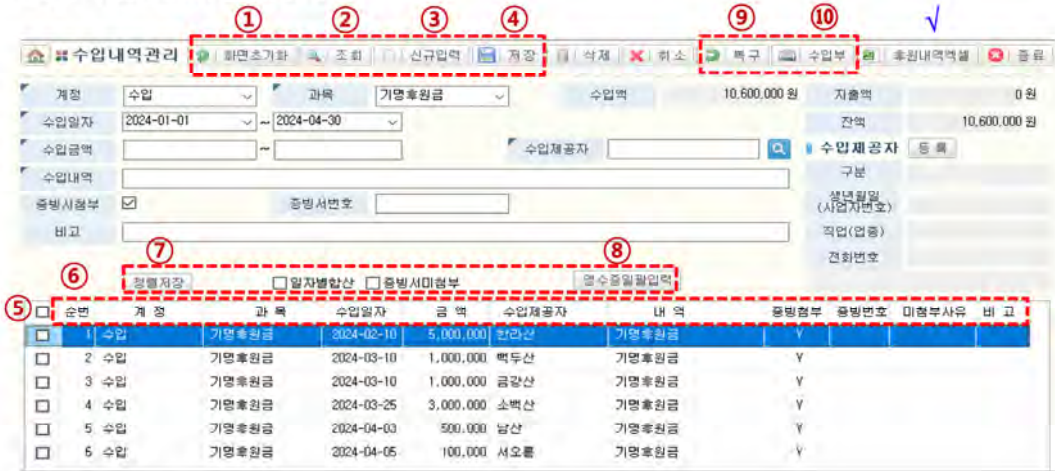


수입액 합계, 지출액 합계, 잔액 조회

신규 수입제공자를 팝업창을 통해 입력 및 등록 가능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수입) 내역이 되며, 보고관리에서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 양식으로 출력 가능

가. 화면 및 기능개관(2)



● 주요기능

① 화면초기화	최초 입력 내용이 없는 조회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이다.
② 조회	조회 조건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다.
③ 신규입력	신규 수입내역 입력 화면으로 전환된다.
④ 저장	신규 수입내역 및 수정 내용을 저장한다.

●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 [비교] 지출내역 관리는 [영수증 일괄생성], [영수증 일괄삭제 기능]이 있다.

⑤ 다중선택	다중선택 check시 각 수입 내역 항목 선택이 가능하다.
⑥ 정렬	항목별 제목줄 클릭을 통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수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정렬저장	수입내역 순서를 조정하고 저장하는 기능이다.
⑧ 영수증일괄입력(저장)	영수증 증빙번호를 개별 또는 일괄 수기로 입력할 수 있다.

● 그 외 기능

⑨ 복구	수정 · 삭제한 자료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이다.
⑩ 수입부	계정 · 과목별 수입부 내역을 출력하는 기능이다.

● 후원회 추가메뉴

√ 후원내역엑셀	기명후원금 과목 조회 시 후원금센터 업로드용 엑셀파일 다운로드
----------	------------------------------------

나. 신규내역 등록(1)

● 신규 수입내역 등록 순서

① 신규입력	기본적으로 신규입력기능 화면을 제공하므로, 기존자료 수정 및 조회 중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려면 ① [신규입력]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내역을 등록한다.
② 수입내용 입력	정치자금 회계보고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차례대로 선택 및 입력한다. ※ √ 수입제공자 입력 방법. → III.2.나.Tip 참조
③ 저장	신규 및 수정 수입내역을 저장한다.

● 주요기능

√ 화면초기화	각 항목에 입력한 값을 지운 상태, 즉 기존의 조회 기능 화면으로 되돌리는 기능이다.
√ 조회	조회하고자 하는 조건을 ②에 입력 후 수입내역을 조회 및 검색하는 기능이다.

나. 신규내역 등록(2)

순번	계정	과목	수입일자	금액	수입제공자
1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자	2024-05-29	1,000,000	백두산
2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자	2024-05-31	20,000,000	국회의원백두산
3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자	2024-05-30	500,000	백두산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자	2024-07-23	8,000,000	국회의원백두산

Tip!

< 수입제공자 입력 방법 >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제공자 :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선택 후 사용합니다.
- * 후원회의 경우 후원금 반환 시 기존 등록되어 있는 수입제공자를 반드시 **조회하여 선택**
 -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후원금 기부 시의 수입제공자 정보와 다르게 입력한 경우 동명이인으로 처리되어 반환내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신규 수입제공자 : 수입제공자 등록 을 클릭한 후 팝업창(수입·지출처 관리 화면)을 통하여 수입제공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Ⅲ.1.가.[수입·지출처 등록] 참조

나. 신규내역 등록(3)

● 국회의원 화면 예시

순번	계정	과목	수입일자	금액	수입제공사	내역	정병첨부	증빙번호	미첨부사유	비고
1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자	2024-05-29	1,000,000	백두산	국회의원 자산	Y			
2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자	2024-05-31	20,000,000	국회의원백두산후은 후원회 기부금		Y			
3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자	2024-06-20	3,000,000	백두산	국회의원 자산	Y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자	2024-07-18	5,000,000	국회의원백두산후은 후원회 기부금		Y			

● 계정 및 과목

국회의원	[계정] 자산, 후원회기부금, 보조금, 보조금외지원금 [과목] 선거비용외정치자금
------	-------------------------------------------------

● 후원회 화면 예시

순번	계정	과목	수입일자	금액	수입제공자	내역	종빙형태	종빙번호	미청부사유	비고
1	수입	기명후원금	2024-02-10	5,000,000	한라산	기명후원금	Y			
2	수입	기명후원금	2024-03-10	1,000,000	백두산	기명후원금	Y			
3	수입	기명후원금	2024-03-10	1,000,000	금강산	기명후원금	Y			
4	수입	기명후원금	2024-03-25	3,000,000	소백산	기명후원금	Y			
5	수입	기명후원금	2024-04-03	500,000	남산	기명후원금	Y			
6	수입	기명후원금	2024-04-15	100,000	서오름	기명후원금	Y			

● 계정 및 과목

후원회	[계정] 수입 [과목] 전년도이월, 기명후원금, 익명후원금, 그 밖의 수입
-----	----------------------------------------------

Tip!

후원금 반환 시 처리방법 (예시. 법인명의 후원금 300만원 반환 시)
수입에서 감액(-300만원) 처리, [내역]은 '후원금 반환(후원한 일자)' 등 입력

순번	계정	과목	수입일자	금액	수입제공자	내역	종빙형태	종빙번호	미청부사유	비고
1	수입	기명후원금	2023-11-03	5,000,000	금강산	기명후원금	N			
2	수입	기명후원금	2023-11-03	3,000,000	선우건설	기명후원금	Y			
3	수입	기명후원금	2023-11-03	-3,000,000	선우건설	후원금반환(11. 3. 선우건설)	N			계정입금

다. 등록사항 수정·정렬·삭제(1)

수입내역관리

계정: 후보자등 자산 | 과목: 선거비용외 정치자 | 수입액: 29,000,000 원 | 지출액: 0 원

수입일자: 2024-06-20 | 수입금액: 3,000,000 | 수입제공자: 백두산 | 잔액: 29,000,000 원

수입내역: 국회의원 자산 (선택됨) | 수입제공자: 등록

증빙서류부: | 증빙서번호: | 자금출처: 없음

구분: 국회의원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1975-07-07

직업(업종): 국회의원 | 전화번호: 02-784-1234

순번	계정	과목	수입일자	금액	수입제공자	내역	증빙서류부	증빙번호	미입부사용	비고
1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자	2024-05-29	1,000,000	백두산	국회의원 자산	Y			
2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자	2024-05-31	20,000,000	국회의원백두산후원 후원회 기부금	국회의원 자산	Y			
3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자	2024-06-20	3,000,000	백두산	국회의원 자산	Y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자	2024-07-18	5,000,000	국회의원백두산후원 후원회 기부금	국회의원 자산	Y			

등록사항 수정 방법

① 선택	조회된 화면에서 수정할 수입내역 항목을 선택(파란색으로 표시됨)한다.
② 수정	선택한 수입내역 항목에서 내역을 수정한다.
③ 저장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조회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수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Tip!

★ ②의 수입내역 기재사항(계정, 과목, 수입일자, 수입금액, 수입내역, 수입제공자 등) 모두 수정 가능합니다.

다. 등록사항 수정 · 정렬 · 삭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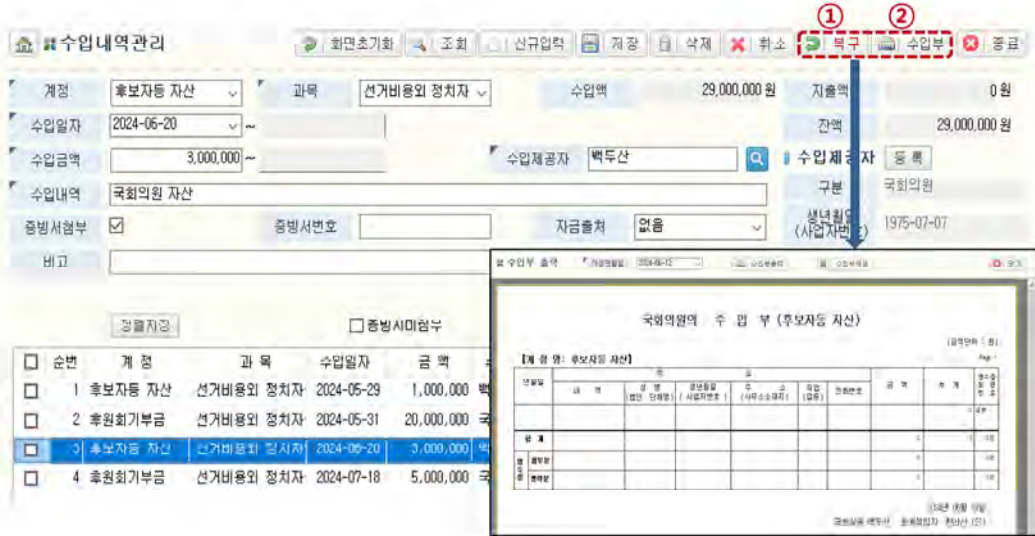
●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

<p>① 다중선택</p>	<p><input type="checkbox"/>를 check하면 각 수입내역의 콤보박스를 선택할 수 있다. 활용예시 여러 개 선택하여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다.</p>
<p>② 정렬저장</p>	<p>같은 수입일자 내 자료의 순서를 변경하는 기능이다. ★순서를 변경한 후 반드시 [정렬 저장]을 클릭해야만 변경된 순서대로 수입내역이 확정된다. Tip 참조 활용예시 같은 일자 내 통장 계좌거래 내역 순서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수입내역 순서를 조정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p>
<p>③ 영수증일괄입력 클릭 영수증일괄입력 저장</p>	<p>필요시 영수증일괄입력 버튼을 통해 수입내역 조회 항목의 √ 증빙번호 란을 직접 편집하여 수기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다. Tip 참조</p>

Tip!

- 수입내역 항목순서 변경 방법 (② 정렬저장 관련)
 - 옮기고자 하는 수입내역 항목을 선택하여 드래그 앤 드롭(파란색으로 선택된 수입 항목을 계속 누른 채로 원하는 위치로 옮김)하여 위치를 변경한 후 [정렬 저장] 클릭
- 영수증 일괄입력(저장) 방법(③ 영수증일괄입력 관련)
 - [영수증일괄입력] 버튼 클릭 => 해당 수입 건 선택(파란색 표시됨)
 - 파란색 부분의 증빙번호 칸을 클릭하여 수기로 각각 입력
 - [영수증일괄입력 저장] 버튼 클릭

라. 기타 기능 (필요시 사용권장)



● 기타 기능

<p>① 복구</p>	<p>수정·삭제한 자료를 수정·삭제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대상 : 단 건 수정 및 삭제, 다중 삭제, 영수증일괄입력 처리 건 - 불가 대상 : 자료초기화에서 삭제한 자료, 수입·지출내역 일괄등록에서 삭제한 자료 비고 지출내역 관리는 영수증 일괄생성, 제거 처리 ; 복구 불가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그인하는 동안 수정·삭제한 자료에 대해 복구가 가능하다. </div>
<p>② 수입부</p>	<p>전체 또는 각 계정별로 조회된 수입내역에 대한 수입부를 @팝업창을 통해 출력 또는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p>

3. 지출내역 관리

가. 화면 및 기능개관(1)

- ★ 메뉴 접속 시 기본적으로 '신규자료 입력 기능'이 제공됩니다.
- ★ 아래의 화면에서 지출내역 조회 및 신규 지출내역 입력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① 또는 ②를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



● 화면 개관

새 자료 (신규 지출내역) 입력시 지출내역 입력 -조회시 조회 조건 입력

새자료를 입력. 저장하면 우측 지출부에 등록 -조회 조건에 따른 조회내역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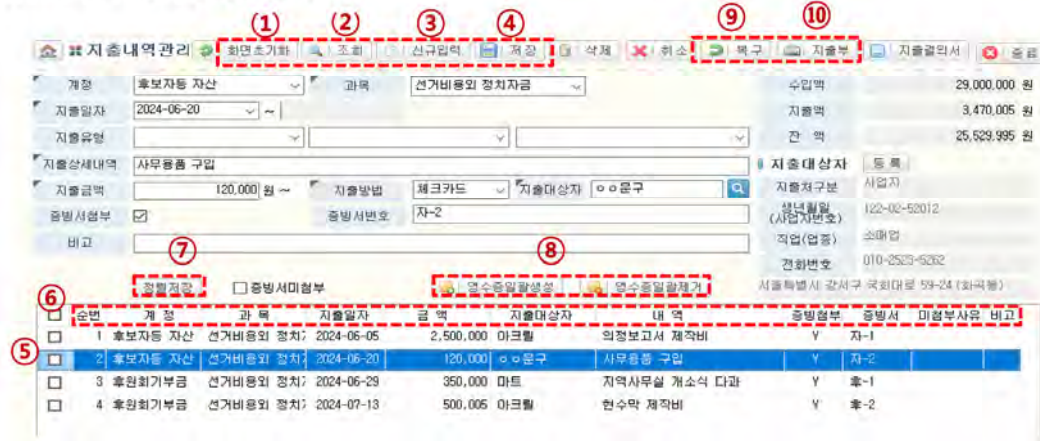
구분	계정	과목	지출일자	금액	지출대상자	내역	등록일	등록사	의정부서	비고
1	후보자금	기안	선거비용외 정치	2024-06-05	2,500,000	이근홍	의정보고서 유권자	Y	기타	
2	후보자금	기안	선거비용외 정치	2024-06-06	100,000	이근홍	사무용품 구입	Y	기타	
3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	2024-06-29	300,000	이근홍	지역사무실 청소역	Y	후기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	2024-07-13	500,000	이근홍	현수막 제작역	Y	후기		

수입액 합계, 지출액 합계, 잔액 조회

신규 지출대상자를 통해 입력 및 등록 가능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지출) 내역이 되며, 보고관리에서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 양식으로 출력 가능

가. 화면 및 기능개관(2)



1 주요기능

① 화면초기화	최초 입력 내용이 없는 조회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이다.
② 조회	조회 조건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다.
③ 신규입력	신규 지출내역 입력 화면으로 전환된다.
④ 저장	신규 지출내역 및 수정 내용을 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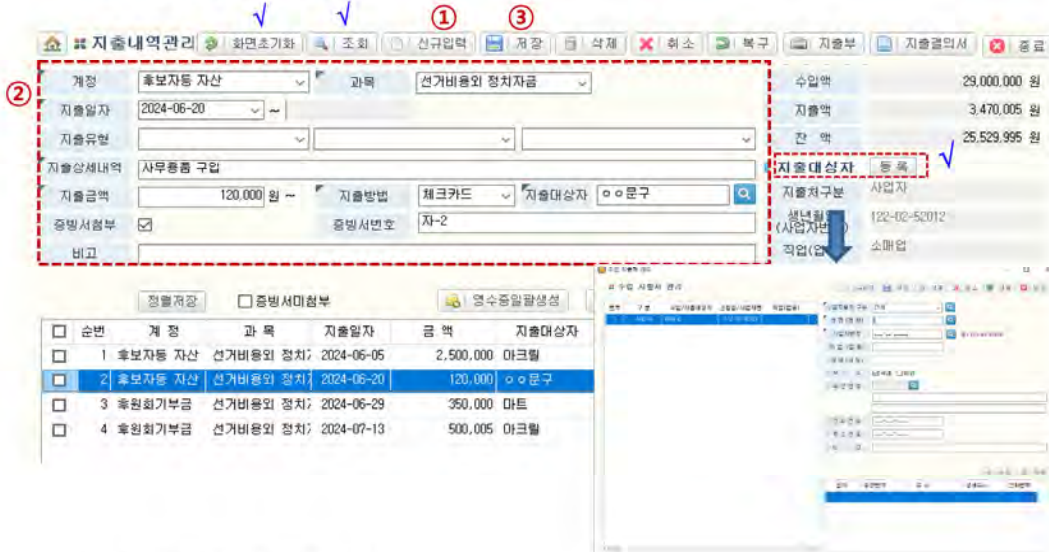
2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

⑤ 다중선택	<input type="checkbox"/> 를 check시 각 지출 내역 항목 선택이 가능하다.
⑥ 정렬	항목별 제목줄 클릭을 통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지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정렬저장	지출내역 순서를 조정하고 저장하는 기능이다.
⑧ 영수증일괄생성 및 일괄제거	영수증 증빙번호를 일괄 생성 및 제거할 수 있다.

3 그 외 기능

⑨ 복구	수정·삭제한 자료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이다.
⑩ 지출부	전체 또는 계정·과목별 지출부 내역을 출력하는 기능이다.

나. 신규내역 등록(1)



● 신규 지출내역 등록 순서

① 신규입력	기본적으로 신규입력기능 화면을 제공하므로, 기존자료 수정 및 조회 중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려면 ① [신규입력]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내역을 등록한다.
② 지출내용 입력	정치자금 회계보고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차례대로 선택 및 입력한다. ※ √ 지출대상자 입력 방법. ● III,3.나,Tip 참조
③ 저장	신규 및 수정 지출내역을 저장하고 지출내역에 등록한다.

● 주요기능

√ 화면초기화	각 항목에 입력한 값을 지운 상태, 즉 기존의 조회 기능 화면으로 되돌리는 기능이다.
√ 조회	조회하고자 하는 조건을 ②에 입력 후 지출내역을 조회 및 검색하는 기능이다.

나. 신규내역 등록(2)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interface for recording transactions. The main form includes the following fields:

- 계정: 지출
- 과목: 기부금
- 지출일자: 2024-04-25 ~
- 지출유형: (empty)
- 지출상세내역: 기부금
- 지출금액: 4,000,000 원 ~
- 지출방법: 계좌입금
- 지출대상자: 백두산
- 지출처구분: 의원
- 증빙서류:
- 증빙서번호: (empty)
- 비고: (empty)

Buttons include '지출대상자 등록' (highlighted in red) and '영수증일괄생성'.

순번	계정	과목	지출일자	금액	지출대상자
1	지출	기부금	2024-04-25	4,000,000	백두산
2	지출	후원금모금경비	2024-06-22	800,000	우체국
3	지출	기부금	2024-06-10	6,000,000	백두산
4	지출	후원금모금경비	2024-07-27	75,600	토스페이

Tip!

< 지출대상자 입력 방법 >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지출대상자 :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선택
- 신규 지출대상자 : **지출대상자 등록** 을 클릭한 후 팝업창(수입·지출처 관리 화면)을 통하여 지출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다.

☞ Ⅲ.1.가.[수입·지출처 등록] 참조

나. 신규내역 등록(3)

● 국회의원 화면 예시

순번	계정	과목	지출일자	금액	지출대상자	내역	증빙서류	증빙서	미첨부사유
1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	2024-06-05	2,500,000	마크필	의정보고서 제작비	Y	자-1	
2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	2024-06-20	120,000	○○문구	사무용품 구입	Y	자-2	
3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	2024-06-29	350,000	마트	지역사무실 개소식 다과	Y	후-1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	2024-07-13	500,005	마크필	현수막 제작비	Y	후-2	

● 계정 및 과목

국회의원	[계정] 자산, 후원회기부금, 보조금, 보조금외지원금 [과목] 선거비용외정치자금
------	-------------------------------------------------

● 후원회 화면 예시

지출내역관리 화면초기화 조회 신규입력 저장 삭제 취소 복구 지출부 지출금의서 종료

계정 지출 과목 기부금

지출일자 2024-04-25 ~

지출유형 지출유형의 각 탭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출상세내역 기부금

지출금액 4,000,000 원 ~ 지출방법 계좌입금 지출대상자 백두산

증빙서첨부 증빙서번호

비고

지출대상자 등록

지출처구분 국회의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1975-07-07

직업(업종)

전화번호 010-1234-56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6길 13-1 (당산동3

정렬저장 증빙서미첨부 영수증일괄생성 영수증일괄제거

순번	계정	과목	지출일자	금액	지출대상자	내역	증빙첨부	증빙서	미첨부사유	비고
1	지출	기부금	2024-04-25	4,000,000	백두산	기부금	Y			
2	지출	후원금모금경비	2024-05-22	800,000	우체국	영수증 발송 비용	Y			
3	지출	기부금	2024-06-10	6,000,000	백두산	기부금	Y			
4	지출	후원금모금경비	2024-07-27	75,600	토스페이	토스페이 수수료	Y			

● 계정 및 과목

후원회	<p>[계정] 지출</p> <p>[과목] 기부금, 후원금모금경비, 인건비, 사무소설치운영비, 그 밖의 경비</p>
-----	-----------------------------------------------------------------

다. 등록사항 수정 · 정렬 · 삭제(1)

③

②

①

순번	계정	과목	지출일자	금액	지출대상자	내역	증빙첨부	증빙서	미첨부사유	비고
□ 1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2024-06-05	2,500,000	아크릴	의정보고서 제작비	Y	자-1		
□ 2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2024-06-20	120,000	○○문구	사무용품 구입	Y	자-2		
□ 3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2024-06-29	950,000	마트	지역사무실 개소식 다과	Y	후-1		
□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2024-07-13	500,005	아크릴	현수막 제작비	Y	후-2		

● 등록사항 수정 방법

① 선택	조회된 화면에서 수정할 지출내역 항목을 선택(파란색으로 표시됨)한다.
② 수정	선택한 지출내역 항목에서 내역을 수정한다.
③ 저장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조회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Tip!

★ ②의 지출내역 기재사항(계정, 과목, 지출일자, 지출유형, 지출금액, 지출대상자 등) 모두 수정 가능합니다.

다. 등록사항 수정 · 정렬 · 삭제(2)

①

순번	계정	과목	지출일자	금액	지출대상자	내역	증빙첨부	증빙서	미첨부사유	비고
1	지출	기부금	2024-04-25	4,000,000	박두산	기부금	Y			
2	지출	후원금모금경비	2024-05-22	800,000	우채국	영수증 발송 비용	Y			
3	지출	기부금	2024-05-10	6,000,000	박두산	기부금	Y			
4	지출	후원금모금경비	2024-07-27	75,600	토스페이	토스페이 수수료	Y			

●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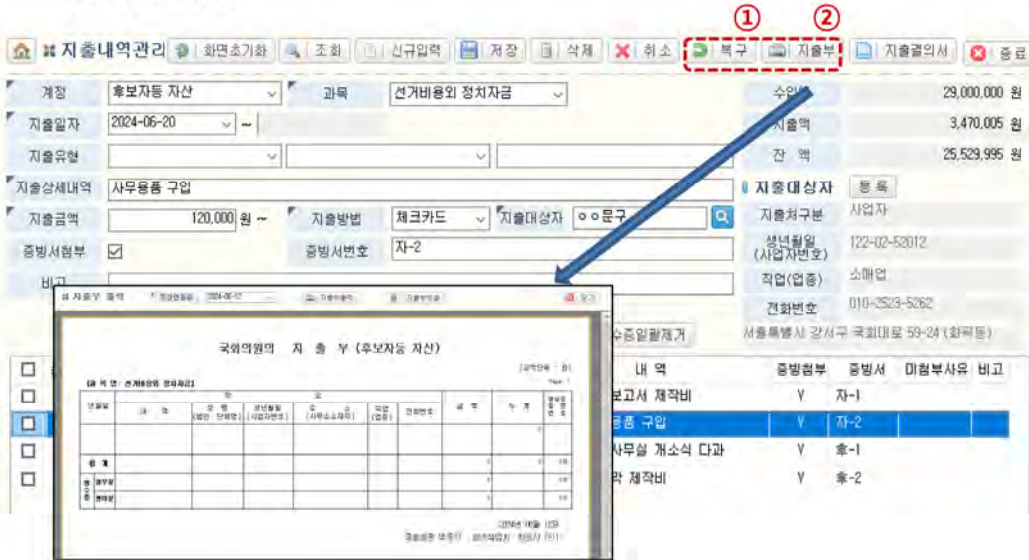
① 다중선택	<p><input type="checkbox"/>를 check하면 각 지출내역의 콤보박스를 선택할 수 있다.</p> <p>활용예시 각 지출내역을 여러 개 선택하여 내역 항목을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다.</p>
② 정렬저장	<p>같은 지출일자 내 자료의 순서를 변경하는 기능이다.</p> <p>★ 순서를 변경한 후 반드시 정렬 저장을 클릭해야만 변경된 순서대로 지출내역이 확정된다. ⇒ Tip 참조</p> <p>활용예시 같은 일자의 통장 계좌거래 내역 순서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지출내역 순서를 조정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p>
③ 영수증 일괄생성 및 일괄제거	<p>증빙서첨부를 (Y)로 체크한 지출내역 항목에 대하여 해당 버튼을 클릭만 하면 영수증 번호를 자동생성하여 일괄 부여 또는 일괄 삭제할 수 있다.</p>

Tip

● 지출내역 항목순서 변경 방법 (② 정렬저장 관련)

옮기고자 하는 지출내역 항목을 선택하여 드래그 앤 드롭(파란색으로 선택된 지출 항목을 계속 누른 채로 원하는 위치로 옮김)하여 위치를 변경한 후 [정렬저장] 클릭

라. 기타 기능



기타 기능

<p>① 복구</p>	<p>수정·삭제한 자료를 수정·삭제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대상 : 단 건 수정 및 삭제, 다중 삭제 건 - 불가 대상 : 영수증일괄생성 또는 제거 처리, 자료초기화 화면에서 삭제한 자료와 수입·지출내역 일괄 등록에서 삭제한 자료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그인하는 동안 수정·삭제한 자료에 대해 복구가 가능하다.
<p>② 지출부</p>	<p>전체 또는 각 계정·과목별로 조회된 지출내역에 대한 지출부를 @팝업창을 통해 출력 또는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p>

4. 수입·지출내역 일괄등록

가. 수입·지출내역 일괄등록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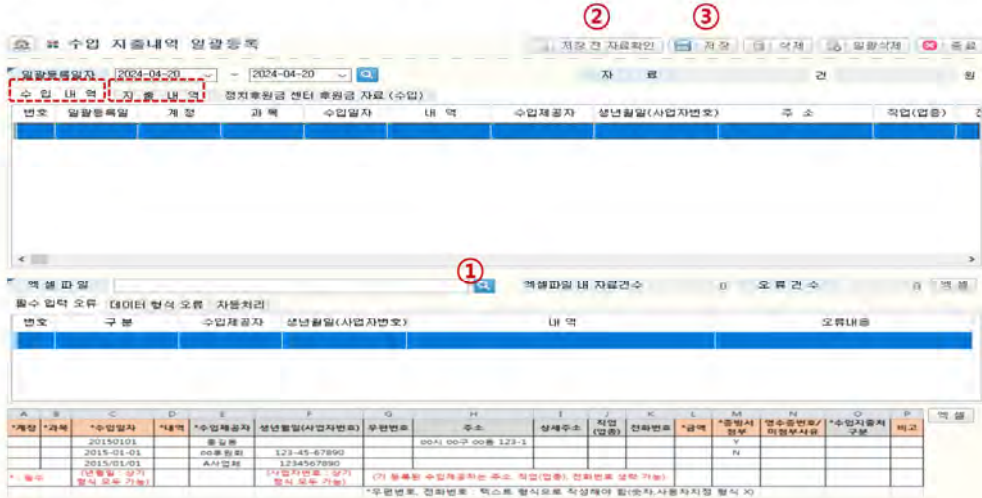
● 해당화면의 주요기능

- ★ 수입·지출내역을 엑셀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여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해당 내역을 일괄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 수입 및 지출건이 발생할 때마다 회계관리 프로그램(수입·지출내역 관리)을 통하여 수입·지출내역을 작성,관리하는 것을 권장하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①을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



나. 수입·지출내역 일괄등록(1)



● 수입·지출내역 일괄등록순서 ★ 수입내역, 지출내역 각 탭을 이용

① [엑셀] 파일 찾기	돋보기 클릭 후, 작성된 수입 및 지출내역 목록(엑셀) 파일 선택
② [저장전 자료확인] 클릭	<p>①의 엑셀파일이 오류가 있는지 점검 => 오류 자료 있는 경우 [저장] 불가 => 오류 내용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오류수정 후 ①의 순서로 돌아가서 진행</p> <p>★ 오류가 없어야 일괄등록 가능</p>
③ 저장	일괄 등록 완료됨



수입·지출내역을 일괄등록하는 경우, 수입지출처는 자동 등록되나요?
 => 네, 수입·지출내역을 일괄등록하는 경우 수입지출처도 같이 일괄등록되므로
 수입·지출처를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재산내역 관리

가. 개 관

● 해당화면의 주요기능

- ★ 재산내역에는 토지, 건물, 주식 또는 유가증권, 비품, 현금 및 예금,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 재산명세서는 회계보고서 작성시 보고사항으로 재산명세서 화면에서 별도 출력하거나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에서 일괄출력 가능합니다.

● 아래의 ①을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

메인화면의 [재산내역] 아이콘을 클릭하면 [재산내역 관리]로 연결된다.



나. 재산내역 관리

POINT

- ★ 신규 재산내역 등록시에는 반드시 신규입력을 클릭하여 새자료를 입력합니다.
- ★ 재산 내역에는 토지, 건물, 주식 또는 유가증권, 비품, 현금 및 예금, 그 밖의 재산이 있습니다. (아래 화면 참조)

● 재산내역 입력방법(① → ② → ③)

① 신규입력	기본적으로 신규입력기능 화면을 제공하므로, 기존자료 수정 및 조회 중 [신규입력]을 클릭하면 신규입력 화면으로 전환되어 신규 재산 등록 가능
② 항목작성	재산 내역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
③ 저장	[저장]을 클릭하면 재산내역에 등록

QnA

재산내역 등록 시 차입·변제한 금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1. [재산구분] 탭에서 [차입금]을 선택합니다.
2. 차입 시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 처리되어 재산명세서 등에 반영되므로, (+) 금액을 입력하고 비고에 차입일자, 차입내용,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 2024.1.1. 자산 차입, 1,000,000원)
3. 변제 시는 (-) 금액을 입력하고 비고에 변제일자, 변제내용,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 2024.5.1. 자산 변제, -500,000원)

다. 자산명세서

POINT

- ★ 전체 자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자산내역 탭을 선택하여 자산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전체 자산내역이나 개별 세부자산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경** **체** 토 지 건 물 주 식 또는 유 가 증 권 비 품 현 금 및 예 금 그 밖의 자 산

구분	종류	수량	내 용	가 액	비 고
도지	소 계				
	종 류	수 량	내 용	가 액	비 고
건물	소 계				
	종 류	수 량	내 용	가 액	비 고
주식 또는 유가증권	소 계				
	종 류	수 량	내 용	가 액	비 고
비품	소 계				
	종 류	수 량	내 용	가 액	비 고
구분	종 류	수 량	내 용	가 액	비 고
	현금 및 예금	1개	00은행 123-45-97890	5,000,000	

②

① **경** **체** 토 지 건 물 주 식 또는 유 가 증 권 비 품 현 금 및 예 금 그 밖의 자 산

②

번호	종류	수량	단위	내 용	가 액	비 고
1	현금 및 예금	1	개	00은행 123-45-97890	5,000,000	

➡ 자산명세서 출력방법(① → ②)

① 탭 선택	전체 자산내역 또는 개별자산내역 탭을 선택
② 출 령	전체 내역에서 자산명세서 출력 또는 개별자산내역 탭에서 세부내역 출력

6. 보고서 및 수입·지출부 [공통]

가. 개관(1)

● 해당 화면의 주요기능

-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보고사항을 한번에 일괄출력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계정 및 과목별 또는 보고사항별(수입·지출부 등)로 개별 출력도 가능합니다.
- ★ 미리보기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 아래의 ①을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

메인화면의 [보고관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으로 연결됩니다.

당해 회계기간	2024-01-01 ~ 2024-12-31	회계기간설정
수입		0 원
지출		0 원
잔액		0 원

6. 보고서 및 수입·지출부 [국회의원용]

가. 개관(2)



● 메뉴 개요 설명

①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별도 확인 및 출력 가능
②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계정·과목별로 별도 확인 및 출력 가능
③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사항을 일괄 출력 및 계정·과목별 또는 표지별 개별 출력 가능(권장)

Tip!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보고사항

1.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2. 재산명세서
3.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4.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5.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
지출부 출력'에서 일괄
출력 가능
(각 메뉴에서 개별출력
가능)

기타 별도 작성

나.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



● 일괄출력 방법

① 수입/지출 기간 등	회계보고기간 확인
② 표지선택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모두 체크
③ 수기 작성사항 기재	표지 및 보고서에 들어갈 사항을 직접 입력
④ [보고서 일괄출력]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사항 일괄 출력

● 개별출력 방법

표지별 출력	위 ②의 콤보박스를 선택하여 [표지출력]을 클릭한다.
계정 및 과목별 출력	위 ⑤의 계정 및 과목 선택 화면에서 계정을 선택하고 과목명 체크(콤보)박스를 선택하여 ⑥ [출력]하면 된다.

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출력 (①→②→③)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① ③ ④

②

별도 수정 없음 (체크안함)

직접 입력사항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자산	4,000,000	0	2,620,000	2,620,000	1,380,000	
후원회기부금	25,000,000	0	850,005	850,005	24,149,995	
정당의 지원금	보조금	0	0	0	0	0
	보조금외	0	0	0	0	0
합계	29,000,000	0	3,470,005	3,470,005	25,529,995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출력 (①→②→③)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① ③ ④

별도 수정 없음 (체크안함)

계정 전체

과목

계정 및 과목을 선택한다.

번호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성명/법인/단체명
			금회	누계	금회	누계		
1	2024-05-29	국회의원 자산	1,000,000	1,000,000	0	1,000,000	박두산	
2	2024-05-31	후원회 기부금	20,000,000	21,000,000	0	21,000,000	국회의원박두산후	
3	2024-06-05	의정보고서 제작비		21,000,000	2,500,000	18,500,000	마크힐	
4	2024-06-20	국회의원 자산	3,000,000	24,000,000	2,500,000	21,500,000	박두산	
5	2024-06-20	사무용품 구입		24,000,000	120,000	21,380,000	ㅇㅇ문구	
6	2024-06-29	지역사무실 개소식 다과		24,000,000	350,000	21,030,000	마드	
7	2024-07-13	현수막 제작비		24,000,000	500,005	20,529,995	마크힐	
8	2024-07-18	후원회 기부금	5,000,000	29,000,000	3,470,005	25,529,995	국회의원박두산후	

● 기능 더 알아보기

- ① [조회] : 조회 조건에 따라 조회 가능하다.
- ③ [출력] : 수입·지출보고서(수입·지출부)를 출력한다.
- ④ [엑셀] : 수입·지출보고서(수입·지출부)를 엑셀 다운로드 가능하다.

6. 보고서 및 수입·지출부 [후원회용]

가. 개관(2)



● 메뉴 개요 설명

①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수입·지출총괄표를 별도 출력시 사용
②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출력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사항을 일괄 출력 및 계정·과목별 또는 표지별 개별 출력 가능(권장)
③ 후원금 기부자 조회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별도 출력시 사용
④ 감사의견서 등 출력	②의 일괄출력시 함께 출력되지 않으므로 별도 출력해야 함.

Tip!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보고사항

1. 재산명세서
2.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3. 과목별 수입부 및 지출부
4.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5.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6. 후원금 기부자 명단
7. 감사의견서 등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에서 일괄출력 가능 (각 메뉴에서 개별출력 가능)

별도 작성

별도메뉴 출력

나.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

1. 검색 조건 설정 (기간, 연월일, 일자별 합산)

2. 표지 선택 (수입/지출부 표지, 계정 표지, 과목 표지)

3. 수입/지출 표지 (2024년, 국회의원법도사무위원회)

4. 보고서 일괄출력

5. 계정 및 과목 선택 화면

6. 출력

표지 별도 출력시 사용

직접 입력사항

번호	계정
1	수입
2	지출

번호	과목
1	전년도이월
2	기명후원금
3	익명후원금
4	그 밖의 수입

번호	과목
1	기부금
2	후원금모금경비
3	인건비(기본경비)
4	사무소설치운영비(기본경비)
5	그 밖의 경비

● 일괄출력 방법

① 수입/지출 기간 등	회계보고기간 확인
② 표지선택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모두 체크
③ 수기 작성사항 기재	표지 및 보고서에 들어갈 사항을 직접 입력
④ [보고서 일괄출력]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항 일괄 출력

● 개별출력 방법

표지별 출력	위 ②의 콤보박스를 선택하여 [표지출력]을 클릭한다.
계정 및 과목별 출력	위 ⑤의 계정 및 과목 선택 화면에서 계정을 선택하고 과목명 체크(콤보)박스를 선택하여 ⑥ [출력]하면 된다.

다. 수입·지출 총괄표

① ② ③

후원회 수입·지출총괄표

기간: 2024-01-01 ~ 2024-06-30

구분	과목	금액	비고	
수입	전년도이월	1,000,000		
	후원금	기명	5,300,000	
		익명	0	
		소계	5,300,000	
	그밖의수입	300,000		
합계	6,600,000			
지출	기부금	4,000,000		
	후원금 무효경비		0	
	기분경비	인건비	80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0	
	소계	800,000		
그밖의경비	0			
합계	4,800,000			
잔액		1,800,000		

- ① [조회] : 조회 조건에 따라 조회 가능하다.(회계보고 기간 확인)
- ② [출력] : 수입·지출총괄표를 출력한다.
- ③ [엑셀] : 수입·지출총괄표를 엑셀 다운로드 가능하다.

라. 후원금 기부자 조회

① ② ③

후원금 기부자 명단조회

구분: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후조기간: 2024-01-01 ~ 2024-12-31

반환자료: 반환자료: 반환금:

반환자료금액: 4건 9,400,000 원

번호	반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후원일자	금액	내역	비고
1	<input type="checkbox"/>	김당산	1967-11-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의		02-784-1234	2024-12-15	5,000,000	기명후원금	
2	<input type="checkbox"/>	지리산	1950-08-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		010-9876-5432	2024-03-13	1,500,000	기명후원금	
3	<input type="checkbox"/>	지리산	1958-08-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		010-9876-5432	2024-04-24	400,000	기명후원금	
4	<input type="checkbox"/>	한라산	1986-08-20	경기도 과천시 출촌대로 44		010-1234-5678	2024-05-17	2,500,000	기명후원금	

- ① [조회] : 조회 조건(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 등)에 따라 조회 가능하다.
- ② [출력] :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출력한다.
- ③ [엑셀] :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엑셀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명후원금 자료 중 후원금 반환으로 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목록에서 초과기부 건(+금액)과 반환 건(-금액)을 반환 체크 후 [반환자료 저장]하여 초과 기부자에서 제외합니다([출력]을 통해 확인 가능)

마. 감사의견서 등 출력

● 감사의견서

🏠 🔍 감사의견서 등 출력 📄 저장 🖨️ 출력 🗑️ 삭제 🔒 종료

감사의견서 심사의결서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감 사 의 견 서

「정치자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회계처리내역에 대한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감사개요
 - 가. 감사기간 : 2024년 07월 02일 ~ 2024년 07월 10일
 - 나. 감사대상
 - 재산상황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
2. 감사의견 : 「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
3. 특기사항 : 없음

● 심사의결서

🏠 🔍 감사의견서 등 출력 📄 저장 🖨️ 출력 🗑️ 삭제 🔒 종료

감사의견서 심사의결서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재 산 및 수 입·지 출상 황 등 의 심 사 의 결 서

- 의결주문

「정치자금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결산내역(내역별칭)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의결한다.

 - 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06월 30일
 - 나. 재 산 : 0 원
 - 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 수 입 : 0 원
 - 지 출 : 0 원
 - 잔 액 : 0 원

2024년 07월 10일

●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 🔍 감사의견서 등 출력 📄 저장 🖨️ 출력 🗑️ 삭제 🔒 종료

감사의견서 심사의결서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국회의원백두산후원회

문서번호 회계 2024-
 시행일자 2024. 07. 10
 수 신 공명사건관리위원회 위원장
 재 목 국회의원백두산후원회 회계보고서 제출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라 정기 회계보고서 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재산명세서 1부.
2. 수입지출총괄표 1부.
3. 과목별 수입부 1부.
4. 과목별 지출부 1부.
5.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6. 후원금 기부자 명단
 - 가.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1부.
 - 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1부.
7.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8.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1부.
9. (대의기관(또는 수입기관)) 의 심사의결서 사본 각 1부.



IV. 회계관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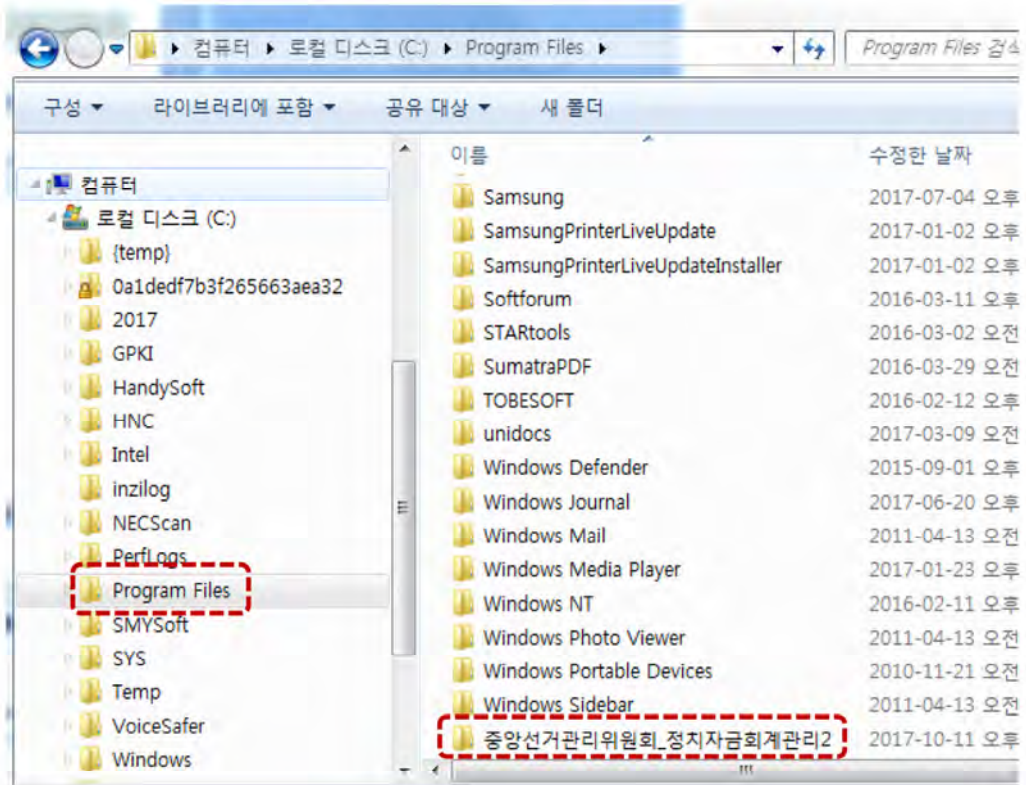
자료 백업 및 복원



나. 해당 폴더 또는 파일 복사를 통한 백업방법

◎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해당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폴더 전체를 복사하여 별도 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필요시 다른 컴퓨터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정치자금회계관리2(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정치자금회계관리3)-"Backup" 폴더에 별도로 백업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 윈도우 탐색기 또는 내컴퓨터를 실행하여 C드라이브에서 Program Files[또는 Program Files(x86)]를 클릭
2. 해당 폴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정치자금회계관리2(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정치자금회계관리3)" 폴더를 선택
3. 복사하여 별도의 USB저장장치에 저장해두거나, 압축한 후 개인 이메일로 송부
※ USB저장장치를 사용할 경우 훼손 및 분실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료 복원 방법

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원방법

- 프로그램을 통해 백업을 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여러 차례 백업한 자료가 있는 경우 원하는 시점의 백업파일을 선택하여 복원하면 됩니다.

The image shows a sequence of steps for data recovery. On the left is a '전체메뉴' (Main Menu) with '자료 백업 및 복구' (Data Backup and Recovery) highlighted and circled in red, with a red arrow pointing to the first window. The first window, '자료 백업 및 복구', shows a file explorer with 'Data' selected. A red circle and arrow point to the '복원' (Restore) button. The second window, '자료 백업 및 복구', shows a file explorer with 'BackUp' selected. A red dashed box highlights a specific backup file, with a red arrow pointing to the second step. The third window is a confirmation dialog with '예(Y)' (Yes) circled in red. The fourth window is a login prompt with '로그인 비밀번호' (Login Password) and 'OK' circled in red.

① 클릭

② 원하는 시점의 백업파일을 선택

③ 클릭

④ 복구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창이 나타난다.

⑤ 로그인비밀번호 입력 후 클릭

확인

자료 복구 시 운영DB의 모든 자료는 선택한 복구DB의 자료로 모두 변경됩니다. 복구를 진행하시려면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Y) 아니요(N)

권한확인

로그인 비밀번호

OK Cancel

나. 별도 저장된 파일 또는 폴더 이용 복원방법

- (1) 사전에 저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정치자금회계관리2(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정치자금회계관리 3)” 폴더를 C드라이브 Program Files(x86) 폴더 내에 복사합니다.
- (2) 기존에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복사할 때에는 “덮어쓰기” 를 선택하여 복사하시면 됩니다.
- (3) “C:\Program Files[또는 Program Files(x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정치자금회계관리2(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_정치자금회계관리 3)” 의 폴더 내에 있는 “PFund2” 를 실행하여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폴더 내의 자료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